

건설 신기술 매뉴얼

2024. 06.



Contents

PART 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1

- 가. 제도 개요 3
- 나. 신기술 지정 13
-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28
-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33
- 마. 신기술 심사 부정·부당 행위 제재 및 의무 준수 39
- 바. 신기술과 특허의 비교 41
- 사. 신기술의 기술 범위 조정 42
- 아. 지정증서 재발급 및 영문 지정증서 발급 안내 43

PART 2

신기술 사후평가

45

- 가. 제도 개요 47
- 나. 사후평가서 제출방법(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제출) 48
- 다. 사후평가서 제출방법(국토교통부 제출) 53

PART 3

신기술사용협약

55

- 가. 제도 개요 57
-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청 처리 절차 59

PART 4

신기술신청서 작성 요령 등

61

- 가.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작성 63
-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작성 97
- 다.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책자 작성 117

PART 5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및 기관별 업무** **133**

가.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135
 나. 기관별 업무 138

PART 6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141**

가. 건설기술 진흥법 143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7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51
 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155
 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163
 바.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186
 사. (국토교통부)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188
 아.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195
 자. 신기술 관련 서식 20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203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서식 217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231
 •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서식 267
 •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271

PART 7 **유사신기술 분류표** **289**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 가 제도 개요
- 나 신기술 지정
-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 마 신기술 심사 부정·부당 행위 제재 및 의무 준수
- 바 신기술과 특허의 비교
- 사 신기술의 기술 범위 조정
- 아 지정증서 재발급 및 영문 지정증서 발급 안내



건설신기술 매뉴얼

가 제도 개요

1) 도입배경

1980년대 후반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낙후되어 있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주도의 R&D제도와 병행하여 민간주도의 건설기술 개발 유도

2) 목 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3)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8조, 제79조, 제89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제37조, 제11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2조의2, 제28조제2항제1호다목, 제40조제1항제5호, 제63조, 별표 9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제43조~제54조, 제94조~제96조 (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이하 “훈령”이라 한다)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85호)
-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55호)
-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61호)

4) 신기술 지정 대상 및 정의 (법 제14조제1항)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은 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

건설기술의 정의 (법 제2조제2호)

“건설기술”이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신기술 지정분야

0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대분야(3개)	중 분야(27개)	소 분야(143개)
A. 토목	01. 도로	01. 도로 구조 설계 02.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3.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04. 도로기층 05. 교면포장 06. 도로안전시설 07. 방음벽 08. 도로 경계석 09. 맨홀 10. 기타 도로 시설
	02. 철도	01. 철도궤도 설계 02. 궤도 03. 철도시스템운영 04. 신호 및 제어 05. 철도 유지보수보강 06. 철도 차량 07. 기타 철도시설
	03. 항만 및 해안	01. 준설 및 매립 02. 항만 및 해안 구조물 03. 수중 구조물 04. 항만 부속 시설 05.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06. 방파제 07. 기타 항만 및 해안 시설
	04. 상·하수도	01. 관로 설계 및 프로그램 02.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3.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4. 상수 처리 05. 하수 처리 06. 상하수도 오니준설 07. 기타 상하수도 시설
	05. 수자원	01.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02. 호안조성 03. 댐 04. 보 05. 하천 수질 정화 시설 06. 지하수 및 관리 07. 기타
	06. 교량	01. 교량 설계 및 구조 02. 교량 상부구조물 03. 교량받침 04. 교량거더 05. 가설시설물 06. 교량 부속 시설물 07. 교량 유지보수 08. 기타 교량시설
	07. 터널	01. 터널 구조 및 설계 02. 터널 구조물 설치 03. 터널 보강 안정 04. 터널 굴착(발파) 05. 터널방수 06. 터널 유지보수 07. 터널환기시설 08. 기타 터널시설
	08. 토질 및 기초	01.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02. 지반 개량 및 보강 03. 지반 굴착 04. 말뚝(Pile) 05. 토목 지중 구조물 06. 흙물막이공 07. 사면 관리 및 보강 08.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09. 기타 토질 및 기초 시설
	09. 조경	01. 사면녹화 02. 식재조성 03. 수목지지 04. 기타 조경시설
	10. 측량	01 수치지도 02. 하천측량 03. 기타 측량
	11.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포장보수제외)	01.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2. 방식 03.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대분야(3개)	중 분야(27개)	소 분야(143개)
B. 건축	01. 건축계획 및 관리	01. 설계 및 프로그램 02. 기타 건축계획
	02. 가설시설물	01. 안전가시설 02. 기타 가설물
	03. 조경	01. 옥상녹화 02. 기타 조경
	04. 기초	01. 기초다짐 및 지정 02. 기초 보강 03. 기타 기초
	05. 철근콘크리트	01. 콘크리트 제조 타설 02. 철근 가공 및 조립 03. 거푸집 04. 철근콘크리트 골조 05. 복합 구조체 06. PC(Precast Concrete) 07. 기타 철근콘크리트
	06. 철골	01. 철골 가공 및 조립 02. 데크플레이트 03. 철골 내화 피복벽칠, 방식 04. 복합 구조체 05. 철골계단 06. 기타 철골
	07. 조적	01. 벽돌 02. 블록 03. 기타 조적
	08. 마감	01. 석공 02. 타일 03. 목공 04. 금속 05. 유리 06. 지붕흙통 07. 미장 08. 창호 09. 도장 10. 수장 11. 단열 12. 건축물세척 13. 기타 마감
	09. 방수	01. 일반방수 02. 복합방수 03.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10. 특수 건축물	01. 초고층 건축물 02. 헬, 돔, 아치형 구조물 03. 비정형 구조물 04. 복합구조물 05. 내진구조물 06. 친환경 건축물 07. 기타 특수 구조물
	11. 해체	01. 발파식 해체 02. 기계식 해체 03. 기타 해체
	12. 보수보강	01. 건축 보수보강 02.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03. 기타 보수보강
C. 기계설비	01. 건설기계	01. 건축기계설비 02. 공기조화/냉난방설비 03. 소방설비 04. 배관설비 05. 파쇄설비 06. 순환골재 제조설비 07. 기타 건설기계
	02. 플랜트	01. 산업 플랜트 설비 02. 복합 플랜트 설비 03. 기타 플랜트
	03.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1. 계측 및 제어설비 02. 자동화 시스템설비 03.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4. 환경기계설비	01. 환경기계설비 02. 폐기물처리설비 03. 기타 환경기계설비

※ 안전시설, 방음벽 등 일부 도로분야와 철도분야는 교통신기술 신청 가능

※ 상수처리, 하수처리 등 일부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는 환경신기술 신청 가능

5)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사후관리(홍보자료 등록 및 활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홍보자료 등록 및 활용)

6) 심사기준

가) 지정 심사기준

(1) 1차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개량 정도, 안전성,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현장우수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 및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나)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 실적이 있는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가점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설명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및 스마트건설 기술
- 감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사법기관 으로부터 벌금, 활용실적 미제출 등의 전적이 있는 기술

다) 심사기준별 세부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기준(배점)	세부항목	배점
지정 1차심사	신규성(50)	기존기술과 차별성	25
		독창성과 자립성	25
	소계	<input type="checkbox"/> 인정(35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진보성(50)	품질 향상	15
		개량 정도	15
		안전성	10
첨단기술성		10	
소계	<input type="checkbox"/> 인정(35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지정 2차심사	현장우수성(70)	시공성	20
		안전성	10
		구조안정성	15
		유지관리 편리성	15
		환경성	10

구분	심사기준(배점)	세부항목	배점
지정 2차심사	경제성(15)	설계·시공비 절감	5
		유지관리비 절감	5
		공사기간 단축	5
	보급성(15)	시장성	10
		공익성	5
계	□ 2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연장 2차심사	활용실적(3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의 우수성(70)	기술수준	15
		품질검증	15
		경제성	10
		시장성	5
		안전성	10
		환경성	5
		기술개량	5
		권고사항 이행여부	5
	가점(10)	사후평가결과	5
		해외활용실적	1
		기술보급노력	1
		기술가치평가	2
		스마트건설 기술 여부	1
	계	□ 2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 신청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기준 중 세부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7) 보호기간

- (최초)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8년(영 제35조 제1항)
- (연장)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영 제35조 제2항)
-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평가점수	80 이상 ~100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등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등급 결정, 종합평가점수 40점 미만은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8) 처리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심사 완료
- 다만,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 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 의견 및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9) 신기술 자료관리

신청인은 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심사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신기술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요약자료 등 홍보용 자료를 신기술 인증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진흥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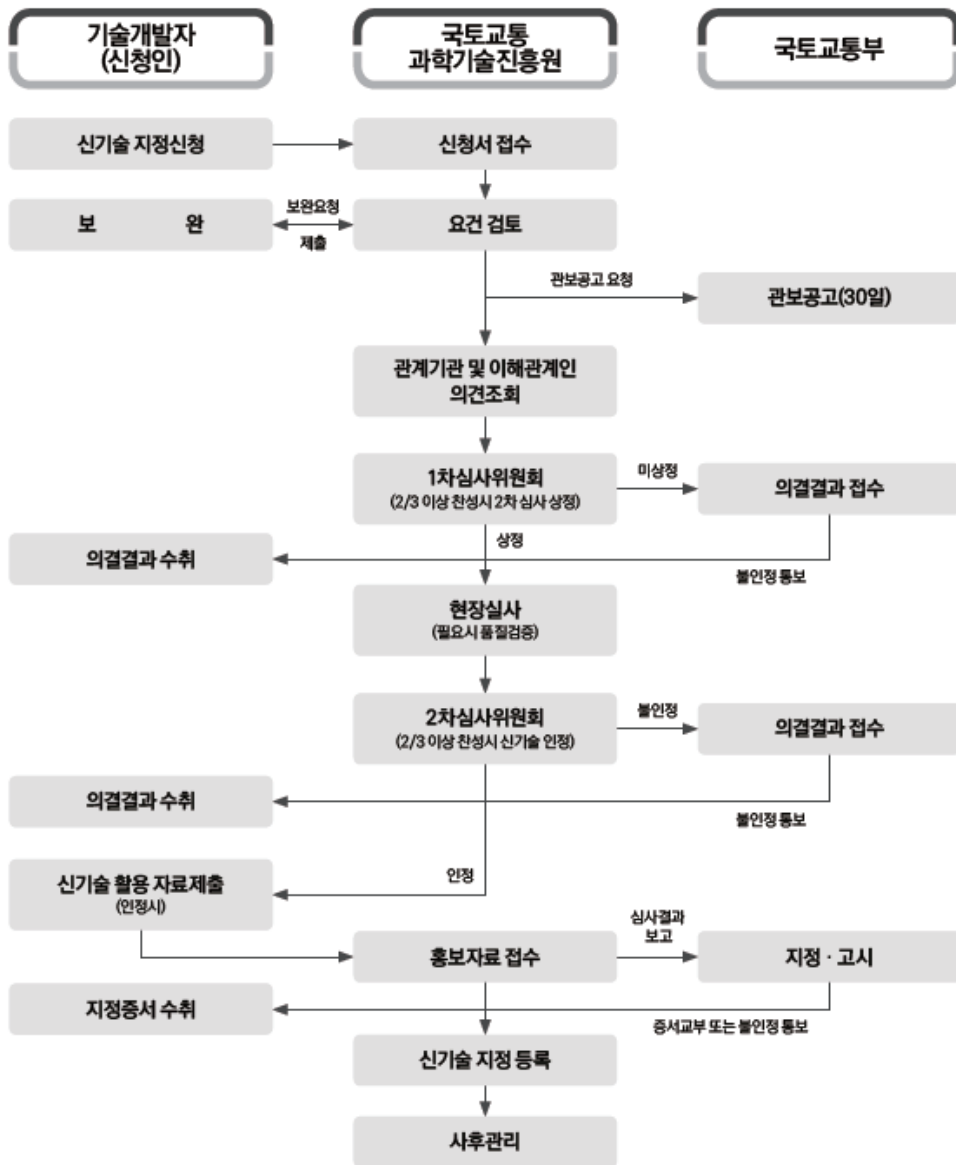
10) 제도 변천 주요 내용

- '87.10.24 : 제도 신설(법 제정에 따른 신기술 제도 신설)
- '89. 5. 1 : 제도 시행(영 제정 및 시행)
- '95. 8. 4 : 신기술 보호기간 변경(2~5년 ⇒ 5~10년)(영 개정)
- '99.10.30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최초 3년, 연장 7년)(영 개정)
- '03. 5.23 : 선행기술조사제도 도입(평가규정 개정)
- '05. 6.27 : 예비심사제도 폐지 → 1차 및 2차 심사로 이원화,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1차 심사 ⇒ 서면평가)
- '06. 7.11 :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로 원가계산서 추가(평가규정 개정)
- '07. 3.16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1차 심사 면제)(평가규정 개정)
- '08. 4.28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로 원가계산서 추가 (평가규정 개정)
- '10. 5.28 :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 최초 보호기간 변경(3년 ⇒ 5년), 신기술신청자격 범위 변경(특허출원자 ⇒ 특허보유권자) 등
- '10.12.13 : 최초 보호기간 변경(3년 ⇒ 5년)(영 개정)
- '12.10. 1 : 2차 심사 불인정 기술 재신청시 1차 심사 면제, 국가R&D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등(평가규정 개정)
- '14. 5.23 : 근거법령 개정(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15. 6.30 : 국토부훈령 통폐합(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
- '16. 5.19 : 신기술 협약제도 신설(영 개정 시행)
- '16. 6.30 : 신기술 사용 의무조항 및 담당자 면책규정 신설(법 개정)
- '16.11. 8 : 협약규정 제정

- '17.12.26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 ※ 발주청 주도 건설기술 시험시공 지원, 특정공법 심의 및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개선, 사후평가 강화 등
- '17.12.29 : 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변경(5년 ⇒ 8년)(영 개정)
- '19. 2.26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 ※ 시험시공 비용지원(50%), 신기술 심사·검증 절차 보완 및 갈등 조정절차 마련 등
- '19. 7. 1 : 신기술사용협약 제도 법적근거 강화(법, 영, 규칙 및 협약규정 개정)
- '19. 8.27 : 신기술 신청기술 적용 담당자 면책규정 신설(법 개정)
- '19.12.25 : 신기술 범위조정 및 지정취소 절차 마련(평가규정 개정)
- '21.10.14 : 신기술 심사의 공정성 및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평가규정 개정)
- '21.11.23 : 신기술 사후평가서 서식 개정(훈령 개정)
- '22.10.13 :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 근거 마련(평가규정 개정)
- '24. 4.23 : 신기술 시험·검사기관 KOLAS 인증 기관 추가(시행령 개정)
- '24. 5.20 : 공모형 신기술 신설 및 신기술관리위원회 강화(평가규정 개정)

나 신기술 지정

1) 지정심사 처리절차



2) 신청자격

가) 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의 최종권리자 (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매뉴얼 제8호 서식]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나) 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지식(산업)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 최초 권리자는 자격이 소멸

3) 제출서류

- 제본책자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25부(2차심사 불인정 후 재신청시 25부)
 - 별책1 부록 원본 1부
 - 별책2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 1차심사 통과 시 심사위원 및 현장실사 지적사항 반영 후 신청서(2차심사용) 원본 1부 및 사본 2부만 제본책자로 제출

○ 전자문서 파일형식(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업로드)

- 신청서 : 한글파일(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엑셀(Excel)파일
- 신청서(별책) : PDF 파일
- 건설신기술품셈 관련 서식(운영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한글파일(2007 버전 이상)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제출 및 전자문서 업로드)

- 인감증명서(개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활용실적 서약서[매뉴얼 제12호 서식],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매뉴얼 제8호 서식] 등

※ 진흥원장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 사전검토 결과를 1차심사위원회에 보고

4) 신청서 접수 절차



5) 신기술 지정 심사 신청수수료

- 수수료 금액 : 총 200만원(VAT 없음, 현장실사 비용 별도)
 - 1차심사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현장실사 비용 : 실비 정산하여 납입
 - 2차심사수수료 : 100만원(1차심사 통과 후 납입)
- 수수료 납부방법
 - 1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근무일 기준)
 - 2차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6) 선행건설기술 조사

- 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행 건설기술을 조사하여 목록을 신청인에게 송부
- 신청인은 조사된 선행건설기술과 신청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답변자료를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와 신청인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

7) 원가계산 조사

- 신청인은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구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
 - ※ 원가계산서 뒷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 제시(용역기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9조에 따라 해당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첨부자료로 제시
- 원가계산서는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원가계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원가계산서 표지 및 내용은 “2. 신기술신청서 작성 요령” 참고
-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 원가계산서 발급후 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재조사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가) 관보공고

- 영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go.kr) 참조
- 공고 내용 [매뉴얼 제2호 서식]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내용 및 범위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 평가규정 제9조에 의한 기술검토기관, 선행건설기술 조사기관,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의견 청취
 - ※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대표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의견조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함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

다) 원가계산서 검토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94조에 따라 진흥원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에 원가계산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
-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여 원가계산서를 30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신청인이 보완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2차 심사에 활용
 - ※ 진흥원은 1차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
 -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2차심사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되는 기술을 보유한 자 (법인 포함)
- 제출기한 : 신청기술의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평가규정 별지 제1호 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공문으로 제출
 - ※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신기술 신청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비밀유지 관련 각서[평가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받고 신청서를 교부

※ 신청서 열람 요청시에는 열람요청 공문, 각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인감증명서 필요),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이해관계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자료

○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또는 의견 제출 제한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평가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상기 기한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10) 1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선정 가능

- 신청인이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검토 후 배제
- 신청분야 유효성 검토
 -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건설분야의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신청서 반려
- 스마트 건설기술 해당 여부 검토
 - 신청기술이 스마트 건설기술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기술이라고 판단하면 스마트 건설기술로 정하고, 이 경우 1차 심사기준 중 '진보성' 내 세부항목인 '첨단기술성'에 만점을 부여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근무일 기준)전에 진흥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최·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건설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및 1차심사위원회 “인정” 여부 의결
 - 1차심사위원회 “인정” 기술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실사할 대상 현장 및 실시시기·현장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 결정
 - ※ 위원회 지적사항 및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 가능
- 심사사항
 - 신청기술이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성·진보성의 부합 여부
 - 기타 진흥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1차심사 면제
 -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동일한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함
 - 1차심사가 면제되는 기술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지 않음

11) 현장실사

- 현장실사 심사위원은 1차심사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현장실사는 신청기술의 심사 기준 충족 여부, 신청서 내용대로의 현장적용여부 · 시공품질 및 성능 ·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 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정수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직원 및 관계자 참여
- 진흥원장은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음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12) 품질검사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요구
- 진흥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 신청인은 품질검사결과 제출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증 사본 제출
 - ※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KOLAS(한국공인인증기구)의 인증기관임

13) 2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선정 가능
- 신청인이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검토 후 배제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근무일 기준)전에 진흥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최·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차심사위원회 “인정” 여부 의결
- 신기술로 “인정”된 경우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의결

○ 심사사항

-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의 부합 여부
-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차심사위원회 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은 1차심사위원회와 동일. 다만,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지 않음

14)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 준비사항

가)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절 차	세부내용	비 고
개회선언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위원별 소개	
심사경과 및 진행 설명	· 심사방법 및 절차 교육(간사) · 심사경과 설명 · 현장실사 내용 설명(2차 심사만 해당)	
관계자, 전문위원 의견청취	· 원가계산전문가, 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변리사 등	필요시
이해관계인 입장	· 이해관계인 참석자 설명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1차심사만 해당)
이해관계의견 내용설명(5분)	· 이해관계의견 설명	
이해관계인 질의응답(5분)	· 이해관계인과 심사위원간 질의응답	
이해관계인 퇴장		
신청인 입장	· 신청인 참석자 설명	
신청기술 내용설명(15분)	· 신청기술 내용 설명	
신청인 질의응답(60분)	· 신청인과 심사위원간 질의 응답	
신청인 퇴장		
평가서 작성(25분)	· 평가서 작성방법 설명(간사) · 평가서 작성(심사위원)	
심사결과 발표	· 1차심사 : 2차심사 상정 여부 · 2차심사 : 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의결내용 확정	· 1차심사 : 현장실사 시기, 장소 확정 · 2차심사 : 신기술의 명칭, 범위 확정	
폐 회	· 폐회선언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3일 전까지 [매뉴얼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제출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신청인이 단독 또는 5개 법인 이하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5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신청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6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5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내에서 참석 가능. 다만,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 신청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신청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발표자료를 15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MS PowerPoint 권장)하고, 15부를 출력하여 심사 당일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시공과정을 담은 동영상, 신청기술 샘플 및 모형 제시 가능)
 - ※ 발표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발표 PC 및 대형 모니터 등 이용
- 위원회 설명자료 중 필수 포함 사항
 - 보호받고자 하는 신기술의 범위
 - 심사요건 설명자료
- 사전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서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증빙자료는 제시 필요

다) 이해관계인 준비사항(1차심사만 해당)

- 이해관계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 전까지 [매뉴얼 제4호 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공문 제출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이해관계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3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이해관계 의견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4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3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MS PowerPoint, 한글 등 발표자료 또는 동영상), 위원회 설명자료(15부) 및 샘플·모형 등 준비
 - ※ 발표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발표 PC 및 대형 모니터 등 이용
- 설명자료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신청기술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지식(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이해관계 의견이 아닌 주장을 할 경우에 경고, 퇴장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 관리

- 신청인은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조정된 명칭, 범위, 내용을 반영하여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및 홍보자료(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포함)를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제출
- 진흥원장은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관리

16) 지정 및 고시

-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이후 지정증서 발급
- 지정증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관보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

17) 신기술지정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8)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초안 제출

-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매뉴얼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술의 명칭, 범위, 내용 등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진흥원)에 제출

19)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이하 '신기술협회')에 제출

-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신기술협회에 제출
 - ※ 보호기간 연장준비를 위한 실적신고 또는 당해연도 실적신고 등은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수시로 제출 가능하며, 활용실적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신기술협회에 문의(02-516-2491)
- 이 실적은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인 “활용실적”의 증빙자료가 되므로 “신기술 범위”에 해당되는 실적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내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연장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
 - ※ 개발자는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 변경시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즉시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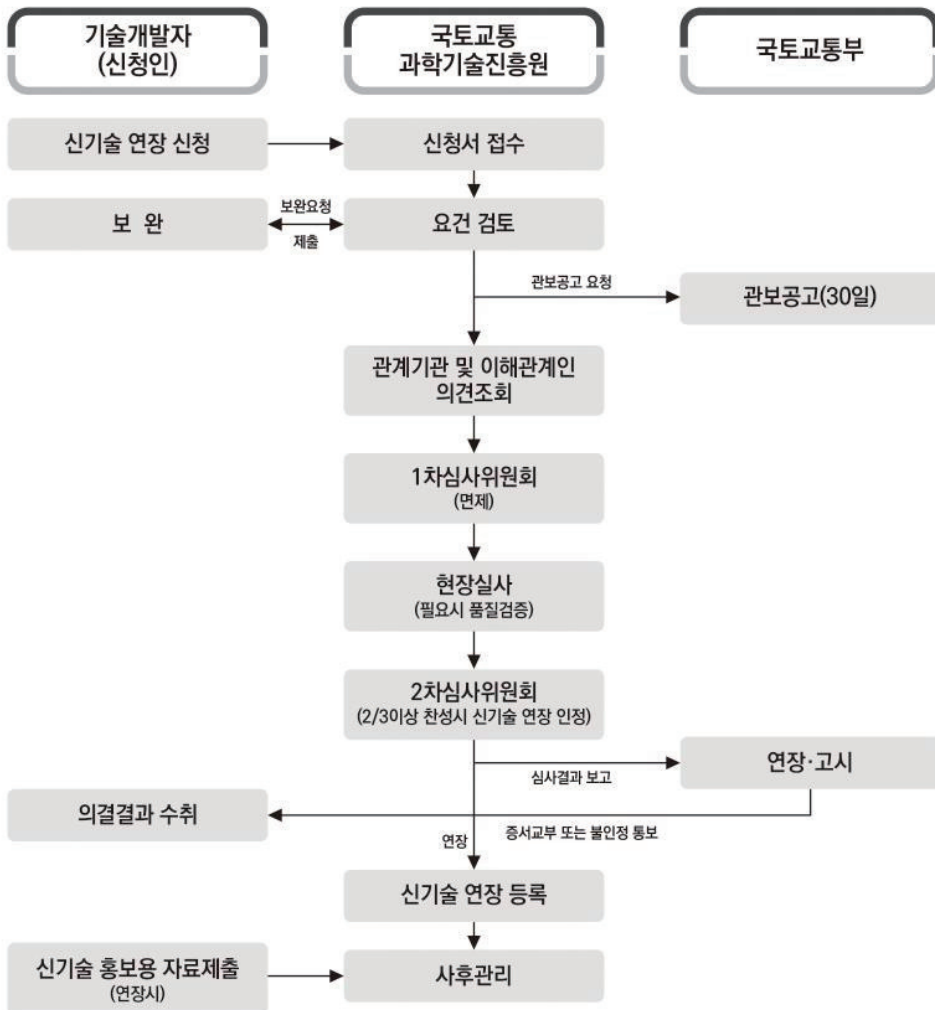
20) 지방서 등 변경금지

-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지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지방서 등 변경 불가
-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승인 요청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영 제35조제2항)
-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출



2) 보호기간 연장 신청자격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 지식(산업)재산권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을의 활용 동의서 필요
 -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매뉴얼 제8호 서식] 참조
 - 복수의 개발자 중 일부만 연장 신청하는 경우 미신청인의 동의서 필요

3) 제출 서류

- 제본책자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25부
 - 별책1 부록 원본 1부
 - 별책2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 현장실사 지적사항 반영 후 신청서(2차심사용) 원본 1부 및 사본 2부만 제본책자로 제출
- 전자문서 파일형식(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업로드)
 - 신청서 : 한글파일(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엑셀(Excel)파일
 - 신청서(별책) : PDF파일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제출 및 전자문서 업로드)
 - 인감증명서(개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활용실적 서약서,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 시) 등

4) 신청서 접수 절차



5)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신청수수료

- 수수료 금액 : 총 100만원(VAT 없음, 현장실사 비용 별도)
 - 현장실사 비용 : 실비 정산하여 납입
 - 2차심사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수수료 납부방법
 - 2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근무일 기준)
 -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6) 원가계산 조사

- “나. 신기술 지정” 중 ‘7) 원가계산 조사’ 내용 참고

7)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나. 신기술 지정” 중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내용 참고

8)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나. 신기술 지정” 중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참고

9) 1차심사위원회

- 보호기간 연장심사는 1차심사 면제

10) 현장실사

- “나. 신기술 지정” 중 ‘11) 현장실사’ 내용 참고

11) 품질검사

- “나. 신기술 지정” 중 ‘12) 품질검사’ 내용 참고

12) 2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선정 가능
 - 신청인이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검토 후 배제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근무일 기준)전에 진흥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최·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 의결
- 심사사항
 - 품질검증·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
 -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
 -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 준비사항

- “나. 신기술 지정” 중 ‘11)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 준비사항’ 내용 참고
 - * 신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연장신청하지 않은 최초 신기술개발자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내에서 참석 가능하되,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신기술 지정심사와 같은 처리절차의 설명은 생략함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0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1)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4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마련하여 시행
 - ※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2015.6.30.)

○ 기술사용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3항)
-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
-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 신기술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 사용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함

-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7조)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 지정증서(인증서)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2) 신기술의 활용 지원

- 신기술 우선적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함(법 제14조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영 제34조제2항)

※ 영 제34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발주청에 건설신기술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건설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법 제14조제5항과는 상충되지 않음

○ 담당자 면책

-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법 제14조제6항)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영 제34조제3항)
-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36조제1항)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함(규칙 제12조)

○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 전)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함(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 기술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3) PQ점수 등 부여

- 규칙 제28조 및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규칙 제44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평가시 ±5점 가감점(기술개발, 신기술, 별점 및 재해 발생 등)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5호, 2022.10.4. 일부개정)
 - 개발실적 항목에서 2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3점까지 배점
 - ※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 용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2015.06.30)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45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2)
 - “기술능력”에 PQ심사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최대 4점까지 배점
 - ※ 단, 개발실적의 경우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조달청지침 제3130호 별표2)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신기술 개발건수 및 활용실적(금액) 각 3점 배점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7호)
 - 기술능력 평가항목에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각 1점 배점
-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신인도평가액”에 건설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
 -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항목에 신기술 배점 (공사비에 따라 차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74호 별표2)
 - 최근 2년 이내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금지원 요청 및 기술개발 보상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기술개발 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의 기술보증 등)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영 제34조제5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마 신기술 심사 부정·부당 행위 제재 및 의무 준수

0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사전 로비, 명단 유포 및 누설(고지 포함)한 경우에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 및 이해관계의견 제출 반려 및 제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2) 청탁 등 부정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시 신청인의 경우 당해 신청서 반려, 이해관계인의 경우 이해관계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 제한, 심사위원의 경우 신기술심사전문가 그룹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시 위원회 입장 제한, 경고, 퇴장조치

3) 신기술 신청서 임의공개에 대한 제재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

4) 신기술 부당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청은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 사용 배제 가능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연장기간 경감 또는 연장 불허 조치
- 부정행위시 진흥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 게재

5) 활용실적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

-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89조제1호)

6)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심사를 회피하여야 함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기관에 소속 (최근 3년내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된 자
 -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안됨

바 신기술과 특허의 비교

구 분	특 허	건설신기술
근거법령	특허법	건설기술진흥법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지정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보급성
대상	발명 (구체화된 아이디어)	건설기술 (건설시공기술,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안전진단·시설물 유지·시험 등)
존속기간 (보호기간)	20년	8년 (활용실적에 따라 3~7년 연장 가능)
심사 소요기간	18개월 내외 (우선심사의 경우 4~6개월)	5~6개월
독점·배타적 (VS. 침해)	직접적 (침해소송 또는 형사)	간접적 (기술사용료 또는 민사)
실시권 설정	법적 보호 (통상·전용)	불가능 (계약·협약자)
활용율	3~6% (추정)	74.1% (최근 3년 평균)
기술 우선적용	없음	발주기관 우선사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화, 시험시공 권고 등
심사방법	심사관 1인에 의한 서류조사 및 검토	기술의 시험·검증 및 현장적용 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

사 / 신기술의 기술 범위 조정

1) 관련 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2

2) 기술 범위 조정 개요

보호기간 중 신기술범위의 조정은 신기술 지정 이후 개량한 내용을 범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로 신규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핵심기술·재료·장비·시공법 등이 변경되어 신규 지정심사에 준하는 기술성이나, 현장적용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범위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신기술관리위원회 구성

신기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기술 범위의 조정을 의결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평가규정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

4) 신청 절차

기술범위 조정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신기술관리위원회 구성 ⇒ 기술범위 조정심사 실시 ⇒ (필요시)현장실사 ⇒ 심사결과 통보 ⇒ 지정증서 재발급

5) 제출서류

신청서[매뉴얼 제14호 서식], 신기술 홍보자료, 그 외 관련 자료 등 제출

아 지정증서 재발급 및 영문 지정증서 발급 안내

0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1) 관련 규정

- 지정증서 재발급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제2항
 - ①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②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③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④ 부도·폐업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존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
 - ⑤ 부도·폐업 등으로 신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다만, 승계자는 해당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제한한다.
 - ⑥ 보호기간 또는 기술범위가 조정된 경우

- 영문 지정증서 발급 관련 ‘건설신기술 매뉴얼’ [매뉴얼 제11호 서식]

2) 발급 절차

신청 공문 및 재발급신청서(또는 영문 지정증서 초안) 등 제출 ⇒ 접수 ⇒ 발급 검토(또는 영문 지정증서 초안 감수) ⇒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 요청 ⇒ 검토결과 국토부 확인 ⇒ 지정증서 발급

3) 발급시 제출서류

No	제 출 서 류	영문 지정증서	증서 분실	증서 훼손	기재/권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법안설립 등	인수·합병 등 권리변경	부도·폐업 권리포기	부도·폐업 권리승계
1	신청기관의 재발급 요청 공문 (해당시 영문증서 지정증서 발급 요청 공문)	○	○	○	○	○	○	○
2	신청기관의 재발급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	○	○	○	○
3	지정증서 원본(사본) 반납 · 사본 제출시 분실 경위가 명시된 분실사유서 제출 * (원본전부) 해당 신기술의 공동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지정증서 원본 전체 제출	○ (사본)	○ (사본)	○ (원본)	○ (원본전부)	○ (원본전부)	○ (원본전부)	○ (원본전부)
4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	○	○	○	○
5	신청기관의 법인(개인) 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문 포함				○	○	○	○
6	신청기관의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날인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	○	○	○
7	보유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빙서류 · 특허등록원부(권리사항 변경 확인)				○	○	○	○
8	개발자 변경 현황 · [첨부1 개발자 변경 현황]에 따라 작성				○	○	○	○
9	신기술 사용협약증명원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된 증명원							○
10	양도양수, 인수합병, 분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승계증빙자료, 법인분할계획서 등					○		
11	신기술 개발자 변경 동의서 · [첨부2,3 사유서(승계인), 동의서(공동개발자)]에 따라 작성				○	○	○	○
12	부도·폐업된 기업의 신기술 권리변경 동의서 · [첨부4 신기술 권리변경 동의서]에 따라 작성						○	○
13	지정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	○
14	영문지정증서 초안 · 매뉴얼 제11호 서식	○						
15	지정증서 받으실 주소 · 각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	○	○	○	○	○

※ 첨부1~4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PART
02

신기술 사후평가

- 가 제도 개요
- 나 사후평가서 제출방법(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제출)
- 다 사후평가서 제출방법(국토교통부 제출)



건설신기술 매뉴얼

가 제도 개요

1) 목 적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한 후 기술의 장·단점 등에 대해 신기술 사후평가를 하고 이를 진흥원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축적하여, 신기술 사용자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술의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54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21조

3) 제출 대상

- 신기술 사후평가는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은 공사준공일 기준 보호기간내 신기술이 해당

4) 제출 시기 및 방법

-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식에 의한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봄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신기술 해당 공종이 완료되어 기성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사가 완료된 준공일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공사의 기성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5. 신기술 관련 질의회신' 중 '9) 기타' 참조)

5) 사후평가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 통보 및 관리 조치하고, 진흥원은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 관리

나 사후평가서 제출방법(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제출)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로그인시 신청인/이해관계인/심사위원/사후평가자 선택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찾기 가능

2) 사후평가 화면이동 및 신기술검색

- 로그인 후 상단의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를 클릭하여 화면 이동
- '지정번호', '신기술명칭' 또는 '개발자'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기술 목록이 나타나고 해당 목록의 좌측 "사후평가" 버튼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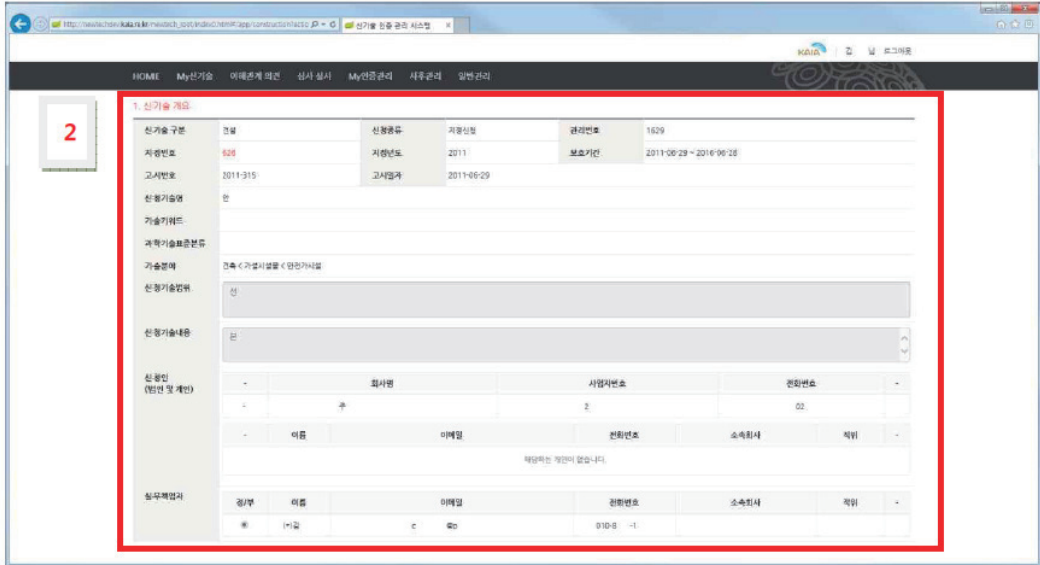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Construction New Technology Post-evaluation) interface. The main menu includes '신기술 선별-접수여기', '이해관계 의견제출', '심사평가',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and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The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1' callout. Below the menu is a table titled '[관보공고 및 공제사항]' with columns for '번호', '구분', '제목', '작성처', '작성일', and '조회수'. A large blue arrow points from the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button to a modal window titled '건설 신기술 사후평가 작성'. The modal window contains input fields for '지정번호', '신기술명칭', '개발자', and '신기술번호', along with a '조회' button. Below these fields is a table with columns for '지정번호', '신기술명칭', '개발자', '보유기간', and '작성'. The first row of this table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번호	구분	제목	작성처	작성일	조회수
117	교통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22	14
116	교통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21	8
115	건설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6	53
114	건설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6	10
113	건설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4	15
112	교통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4	13
111	교통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4	8
110	교통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4	7
109	교통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4	15
108	건설신기술 서양공고	공	의	2017-09-0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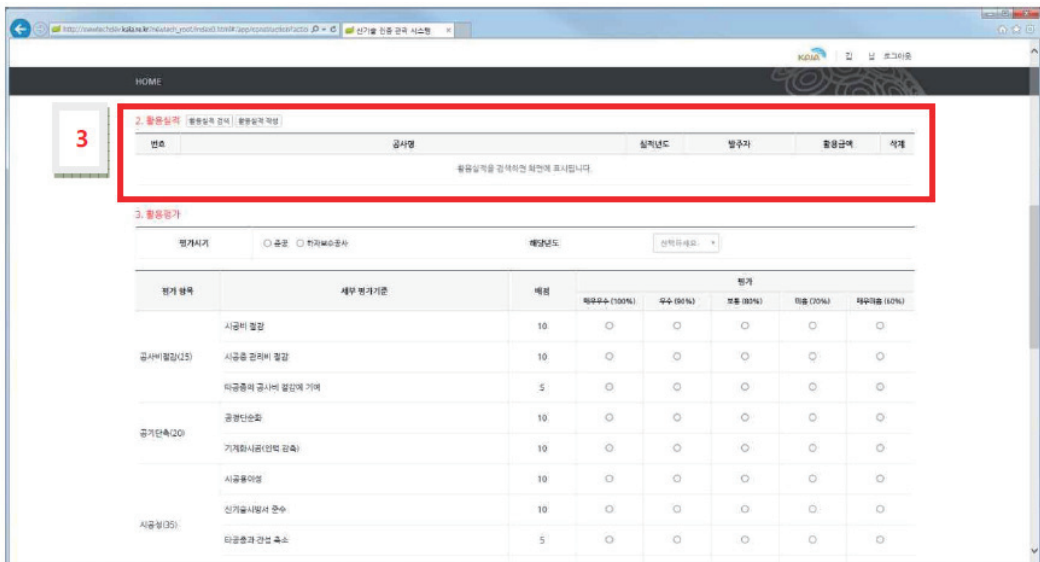
지정번호	신기술명칭	개발자	보유기간	작성
625	방	한	2011-06-28 ~ 2018-09-27	사후평가
624	방	한	2011-06-28 ~ 2018-09-28	사후평가
623	공	손	2011-09-31 ~ 2018-09-30	사후평가
622	동	심	2011-09-18 ~ 2018-09-15	사후평가
621	술	조	2011-04-23 ~ 2018-04-23	사후평가

3) 사후평가 대상 검색

- “사후평가”를 클릭하면 ‘1. 신기술 개요’ 화면에서 공사에 적용한 신기술 일반 정보(기술명, 기술범위, 기술내용, 신청인 및 실무책임자 등)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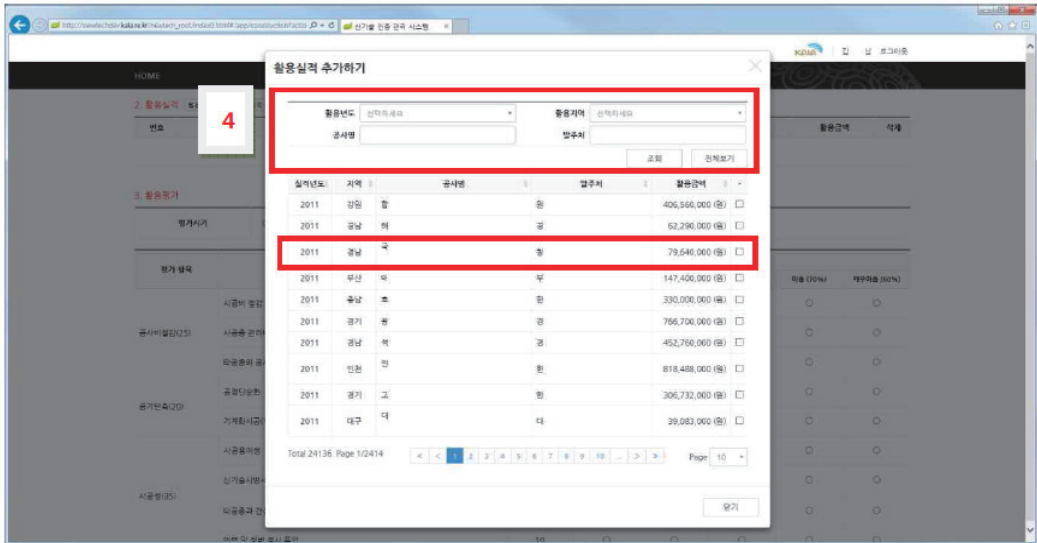


- ‘2. 활용실적’ 부문에는 발주청이 공사에 활용한 신기술 정보가 표시



4) 사후평가서 입력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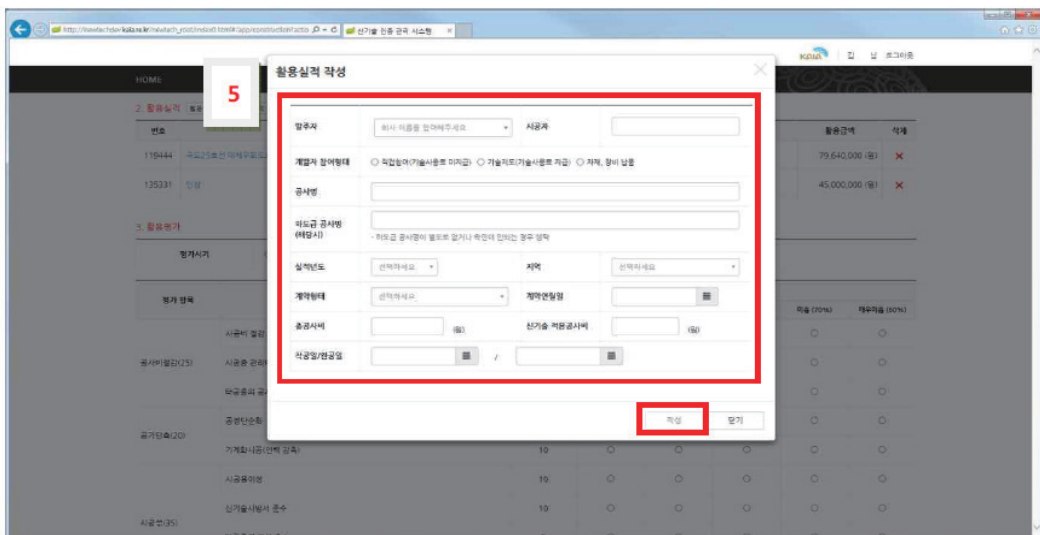
- '2. 활용실적' 좌측의 "활용실적 검색"을 클릭 후 활용실적에 대한 정보 (활용연도, 활용지역, 공사명, 발주처)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통해 검색
- 검색 목록에서 우측의 해당 실적('□')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2. 활용실적'에 입력



02

신기술
사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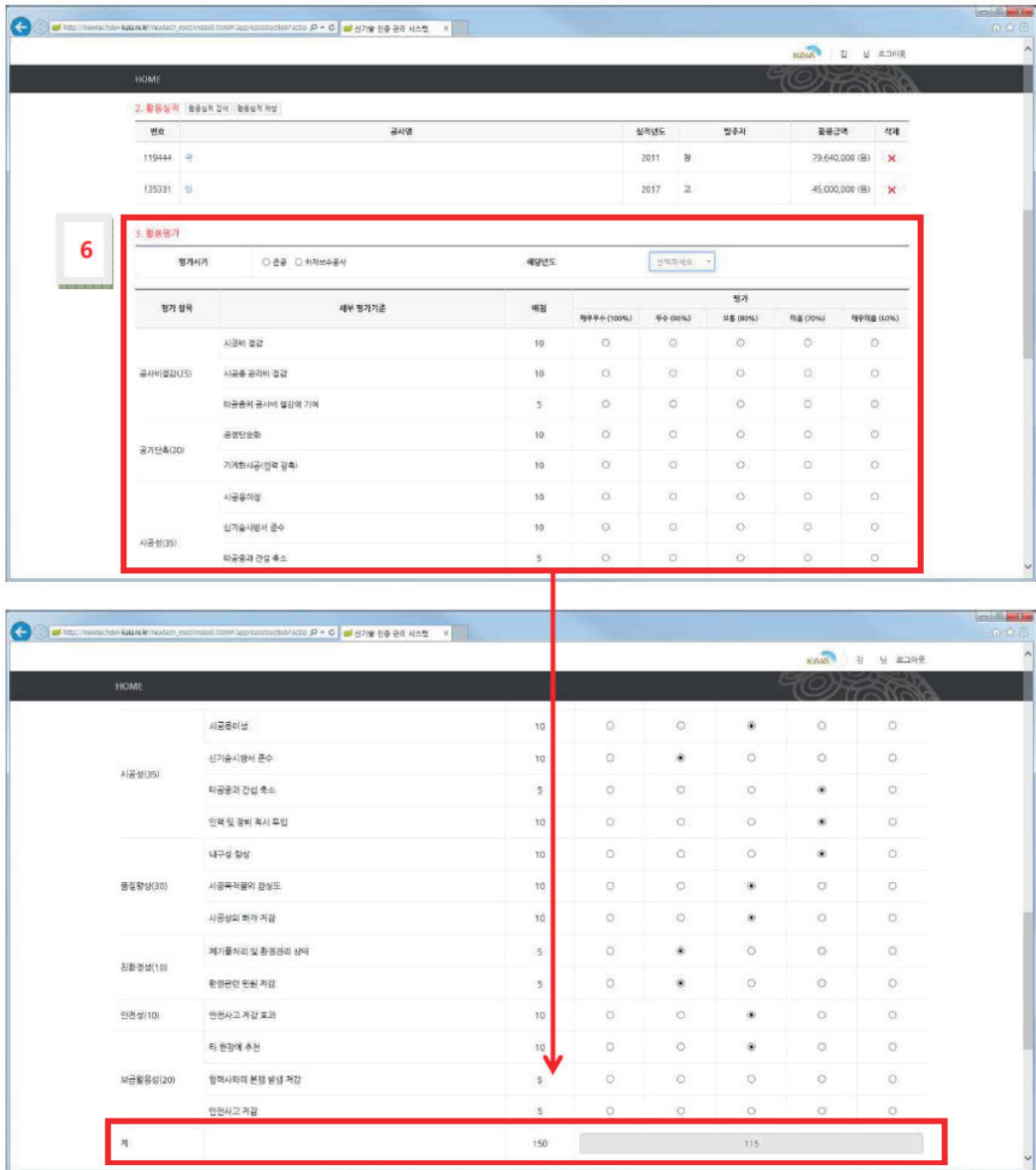
- 2. 활용실적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2. 활용실적' 좌측 메뉴 중 "활용실적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공사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5) 사후평가서 작성

○ ‘평가시기’, ‘해당연도’ 선택 후 하단의 평가항목을 보고 배점에 맞게 평가

※ 평가점수는 자동 계산되며, 150점 만점으로 집계



○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과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입력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사후평가 완료

※ 발주청 사후평가 의견은 해당 신기술을 활용할 발주청에 참고가 되는 자료임에 따라 발주청에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7

4.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우사한 사항에 적용시 참고 사항)
1 / 1000 (300자 이상으로 요약정리를 권장합니다. 최대 1000자 가능)
의견 신

5.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1 / 1000 (300자 이상으로 요약정리를 권장합니다. 최대 1000자 가능)
의견 참

6. 작성가 정보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계	연회번호
대	6		
이름	이메일	연락처1	연락처2
김	m@k	010-3	02-3

취소하기 신청하기

접수번호	자청번호	신기술명	평가년도	작성자	검토
28475	625	망	2017	김	대기

Total 1 Page 1 / 1 Items Per Page 10

다 사후평가서 제출방법(국토교통부 제출)

○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작성 제출

PART
03

신기술사용협약

- 가 제도 개요
-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청 처리 절차



건설신기술 매뉴얼

PART
03

신기술사용협약

가 제도 개요

1) 목 적

-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신기술을 기술개발자가 관련 면허, 시공장비 등을 보유한 건설업체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

2)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3) 협약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4) 처리 기관 및 역할

- 국토교통부
 -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법령 개정 및 협약 업무 제도 개선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신기술사용협약자 신청 접수 및 증명서 발급
 - 신기술사용협약자 활용실적 접수, 관리 및 증명서 발급실적 보고(반기별)

5) 인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요건 및 서류검토 → 신기술사용협약자 여부 결정 → 신기술사용
협약자 시스템 등록 → 증명서 교부 → 사후관리

6) 인정 기준

-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보유면허 :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 보유장비 :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 기술전수 : 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7)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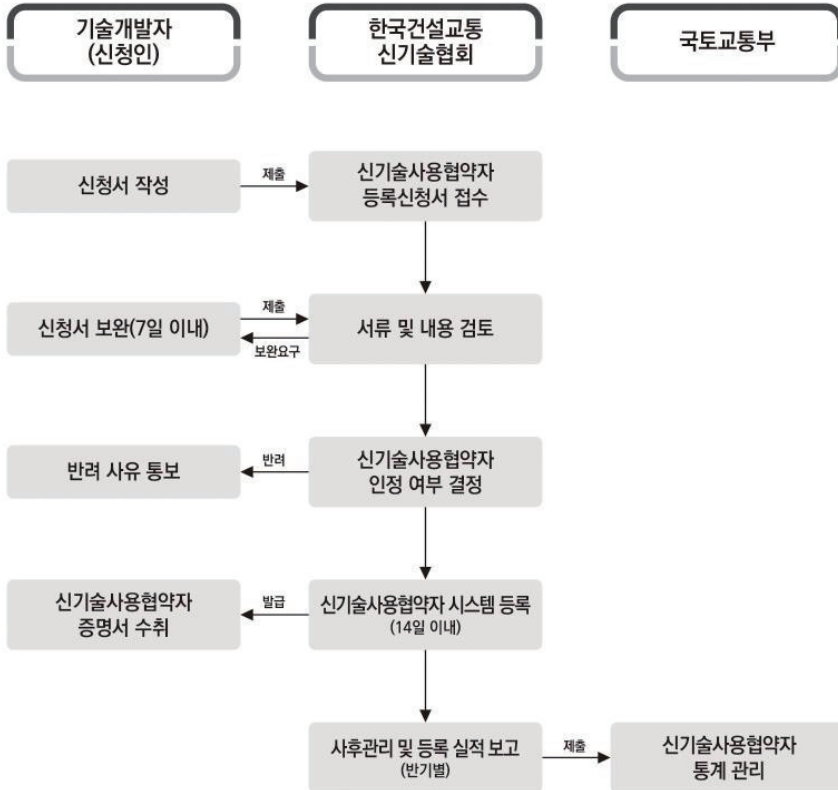
- 신기술사용협약자 신청 및 해약을 위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휴일 제외)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7일 이내
(주말, 휴일 제외)

※ 서류보완, 실태조사 및 검증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8) 신기술사용협약 자료관리

- 건설신기술 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된 경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별 사용협약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청 처리 절차



PART

04

신기술신청서 작성 요령 등

- 가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작성
-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작성
- 다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책자 작성



건설신기술 매뉴얼

가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작성

1)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 일반

- 신청서(책자)는 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 신청서(책자)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훈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 신청서(책자)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가능
- 신청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는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목차와 페이지를 작성
-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7mm)
- 제본 : 좌철, 무선제본
- 신청서(책자)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매뉴얼 제12호 서식],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또는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증빙자료,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2) 신기술지정신청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가) 접수번호, 접수일 등(공란)

나) 신기술의 명칭

- 신청기술 명칭은 신청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 용어 20 단어 이내로 작성
- 명칭에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명칭이 긴 경우와 홍보 등을 위해 명칭을 함축한 약자로 명기 가능
- 5가지 속성을 이용한 표현

구분	속성	표현방법
①	구조	~구조(or 형태 or 모양)의
②	요소기술	~을 이용(or 활용)한
③	적용대상	~에 적용(or 설치)되는
④	적용방식	~방식(형)
⑤	목적	~공법(or 기술)

다)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성명)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명칭 기재(띄어쓰기 포함)
- 주소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략
- 만약,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기술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란을 복수로 작성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제출하는 신청서 원본에만 기재

라) 신기술의 내용(요약)

- 전체적인 기술내용(공법) 중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의 핵심” 내용을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로 요약 표기
- 최적의 ~, 최고의 ~ 등의 미사여구와 수식어 사용 불가

마) 신기술의 범위

- 신청인이 개발·개량하여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성 있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
 - 기술을 구성하는 요소, 성능 구현 방법 등을 범위로 제시
 - 기존 기술의 내용과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포괄적인 개념 등은 범위가 될 수 없음
 -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 성능, 효과, 미사여구 사용 불가
 - 시험성적서, 연구보고서, 현장활용 실적 등을 통해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내용에 한정하여 신기술의 범위로 신청
- ※ 관경 00mm, 굴착깊이 00m, 경간 00m, 옥상방수, 공동주택 등

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

〈측면〉

〈전면〉

신
기
술
지
정
신
청
서

크기
15

2
0
0
0
·
0
(크기10)

신
청
인

(크기12)

신기술지정신청서

(크기30)

(명칭:○○○○○○)

(크기18)

2000. 0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20, 하부여백 5cm)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 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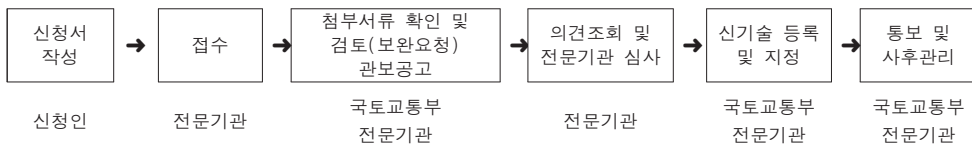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목 차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71
가. 기술개발 배경	71
1) 기술개발 환경	71
2) 기술개발 목표	71
3) 기술개발 과정	71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71
나. 신청기술의 내용	73
1) 기술의 분야	73
2) 기술의 내용 요약	73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74
4) 스마트 건설기술 부합성	74
다. 신청기술의 범위	78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78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78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78
가. 신규성	78
1)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79
2) 독창성 및 자립성	80
나. 진보성	80
1) 품질 향상	80
2) 개량 정도	81
3) 안전성(safety)	81

4) 첨단기술성	81
3. 현장실사 계획	82
가. 현장적용 실적	82
1) 현장적용 목록	82
2) 현장적용 실적 확인	82
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83
1) 목록	83
2) 실사 가능현장 현황자료	84
3)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85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86
가. 현장우수성	86
1) 시공성	86
2) 안전성(safety)	86
3) 구조안정성(stability)	86
4) 유지관리 편리성	86
5) 환경성	86
나. 경제성	87
1) 설계·시공비 절감	87
2) 유지관리비 절감	89
3) 공사기간 단축	89
다. 보급성	89
1) 시장성	89
2) 공익성	90

5. 신기술시방서	90
6. 유지관리지침서	91
7. 기술 사용 자격	91
1) 필요 면허	91
2) 필요 장비	91
8. 신청인이 보유한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92
1) 선행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92
2) 불인정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92
〈별책 1〉 부록	93
가.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93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93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93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94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94
바. 불인정 사유(불인정 기술 보완 신청서)	95
사. 기타 증빙자료	95
〈별책 2〉 원가계산서	95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기술개발 환경

- 신청기술의 개발 환경 및 배경을 기술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설명

2) 기술개발 목표

- 신청기술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유사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타당한 내용임을 설명

3) 기술개발 과정

- 기술이 개발 또는 개량되기까지 실패를 극복한 내용, 대안의 내용 등 추진 과정을 설명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 기술개발 연혁

개발과정	일 자	주요 진행내용	개발자 (신청인)
예) 개발동기	'00.00.00	•	
예) 시장조사	'00.00.00	•	
예) 공동 기술 개발 협약	'00.00.00	•	
예) 녹색인증	'00.00.00	•	
예) 환경신기술 지정	'00.00.00	•	
∴	∴	∴	∴

※ 신청기술의 조사·연구개발·시험시공·실제시공

-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내역(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부처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총 연구기간	개발자 역할	비고
○○○부	○○○연구	•과제명 : - 세부과제명 :	○○○ ○○○			
∴	∴	∴	∴			

※ '개발자 역할'은 주관, 협동, 위탁, 참여기업 등

- 기술개발 관계자

- 신청인

신청인	개발자	주요 역할내용	증빙자료
신청인1	○○○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	별책 000쪽
	○○○	•품질검증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신청인2	○○○	•기술개발 책임자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 '개발자 역할'은 주관, 협동, 위탁, 참여기업 등

- 연구용역, 시험, 지식(산업)재산권, 발주자 등

구분	기관명	내용	증빙자료
연구용역	○○○대학교	•구조안전성 검토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시험, 검증	○○○시험연구원	•KS ○○ 시험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지식(산업) 재산권 소유기관	○○○	•특허 제10-000000호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원가계산서	○○○연구소	•구조안전성 검토	원가계산서
현장적용 (발주자)	서울시	•○○○ 건설공사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	...	별책 000쪽

○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 보유자 등

구분	기관명	내용	증빙자료
유사신기술 보유자	(주)○○, ○○대학, 홍길동	•건설신기술 제000호	별책 000쪽
	○○○	•환경신기술 제000호	별책 000쪽
유사지식 재산권보유자	(주)○○, ○○대학, 홍길동	•특허등록 제000000호	별책 000쪽
	○○○	•실용신안등록 제000000호	별책 000쪽
특허 침해, 소송 등 분쟁	○○○	•특허심판 진행중	별책 000쪽
	○○○	•소송 진행중	별책 000쪽

* 「유사신기술 보유자」 및 「유사지식 재산권보유자」란에는 신청서 2. > 가. > 1). > 나)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분석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나. 신청기술의 내용

1) 기술의 분야

- 신청기술이 건설기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건설신기술 신청분야 제시

대분야	중분야	소분야	세분야
A토목	01도로	02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1콘크리트 포장
A토목	01도로	04도로기층	01도로기층 포장

※ 신청분야가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2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고, 건설분야의 기술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1차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기술분야는 매뉴얼 제8장 “신기술 유사기술 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2) 기술의 내용 요약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공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도·대표도면·사진 등을 이용하여 설명

개념도(대표도면)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 신청기술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준(품질시험기준 등)을 근거, 타당성 및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수행한 시험시공결과 등 검증결과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증빙자료는 별책에 수록)

검증항목	검증기준	검증결과	분석 내용
압축강도	00MPa 이상	00MPa	신청서 00쪽 품질관련 내용 참고
⋮	⋮	⋮	⋮

4) 스마트 건설기술 부합성

- 신청기술의 내용이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됨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작성시 아래 참고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스마트 건설기술 :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하는 기술로서, 건설프로세스의 디지털화·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안전성 향상에 기여

(참고1) 스마트 건설기술 개념

(출처 : 2018.10.31.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 건설에 **첨단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기술
 - 기존 **경험의존적 산업**에서 **지식·첨단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기술의 융합, 정보의 공유, BIM 등 단계 통합적 기술 적용으로 업역간·단계간 **단절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
 -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성·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 **건설 숲 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가능
 - (**설계**) 3D 가상공간에서 **최적 설계**, 설계단계에서 **건설·운영 통합관리**

< 설계 핵심 기술 >

① 드론기반 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기술

- 융복합 드론*이 다양한 경로로 습득한 정보(사진촬영, 스캐닝 등)로부터 지형의 **3차원 디지털 모델을 자동 도출**
 - * 카메라, 레이저스캔 장치, 비파괴조사 장치, 센서 등과 결합된 드론
- 공사부지의 **지반조사(땅속)** 정보를 BIM에 연계하기 위해 측량, 시추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강도·지질상태 등을 **보간·예측**
- AI를 활용한 형상·속성정보 통합 BIM 모델링

② BIM 적용 표준

- 다른 사용자 간 디지털 정보를 원활하게 인지·교환할 수 있도록 BIM 설계 객체의 분류 및 속성정보에 대한 표준을 구축
- 시간의 경과, 소프트웨어의 종류(버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공통의 파일 형식을 마련
- 축적된 BIM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표준** 구축

③ BIM 설계 자동화 기술

-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속성정보** 포함한 **3D 모델**을 구축(BIM 설계)
 - * 건축 분야는 이미 활성화 vs 토목분야는 현재 도입 단계
- 완료된 프로젝트에서 BIM **라이브러리를 자동 생성**
- **자체 해석**(구조·에너지 등) 및 **기술판단**까지 가능한 BIM 설계
 - * 설계 결과물이 각종 법규, 설계기준 등에 적합한지도 자동으로 검토
- 축적된 사례의 인식·학습을 통한 **AI 기반 BIM 설계 자동화**
 - * 제약 조건 및 발주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최적화된 설계안 자동 도출

- (시공) 날씨·민원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재를 **공장 제작·생산**, 비숙련 인력이 고도의 작업이 가능 하도록 **장비 지능화·자동화**

< 시공 핵심 기술 >

① 건설기계 자동화 기술

- 건설기계에 탑재한 각종 센서·제어기·GPS 등을 통해 기계의 **위치·자세·작업범위**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 작업계획에 따라 건설기계가 **자율이동·작업,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② 건설기계 통합운영 및 관제 기술

- 건설현장 내 다수의 건설기계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운영
- 센서 및 IoT를 통해 현장의 실시간 공사정보를 관제에 반영
- AI를 활용하여 최적 공사계획 수립 및 건설기계 통합 운영

③ 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기술

- 공장 사전제작-현장 조립(Modular 또는 Prefabrication) 공법 확대 적용
- 조립 시공 시 부재 위치를 정밀 제어하고, 접합부를 자동 시공
- 로봇 등을 활용하여 조립 시공(양중·제어·접합 등 일련 과정) 자동화

④ ICT 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술

- 가시설·지반 등의 취약공종과 근로자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센서, 스마트 착용 장비 등으로 취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 축적된 작업패턴·사례(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과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는 예방형 안전관리

⑤ BIM 기반 공정 및 품질 관리

- BIM 기반 공사관리를 통해 주요 공종의 시공간섭을 확인하고, 드론·로봇 등 취득 정보와 연계해 공정진행 상황을 정확히 체크
- 가상시공을 적극 활용하여 조건·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관리 최적화
- AI를 활용해 사업목적·계약조건에 따라 맞춤형 공사관리 방법 도출

- (유지관리) 시설물 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객관적·과학적 분석

< 유지관리 핵심 기술 >

① 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수집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무선 IoT 센서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상황감지형 정보수집
- 대규모 구조물의 신속·정밀한 정보수집을 위한 대용량 통신 N/W
- 다양한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초연결 IoT로 연결성·안정성 강화

② 드론·로보틱스 기반 시설물 상태 진단 기술

- 카메라와 물리적 실험 장비를 장착한 다기능 드론(접촉+비접촉 정보수집)을 통해 시설물을 진단

- 드론-로봇 결합체가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진단**
- ③ **시설물 정보 빅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기술**
 - 시설관리자 판단에 의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표준화**
 - 산재되어 있는 **건설관련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구축**
- ④ **AI 기반 유지관리 최적 의사결정 기술**
 - 구축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유지관리 최적 의사결정** 지원
 - 시설물의 3D 모델(**디지털트윈**)을 구축해 **유지관리 기본 틀로 활용**



(참고2)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출처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호)
별표3의2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 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
-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다. 신청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신청 범위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상세 설명	〈위 신청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재〉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기존 유사기술과 시공절차가 상이한 내용과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절차 표시
- 시공절차가 기존 유사기술과 같은 경우에도 주요자재나 시공방법 등이 상이하면 신기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번호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범위에 해당 여부
1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
2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
3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4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5	⑤양생	⑤양생	
6	⑥거푸집탈영	⑥거푸집탈영	○
7	⑦박리제 도포		
8	⑧표면결함보수	⑦표면결함보수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

- 신규성은 외국기술을 포함하여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의 유무 및 기존 유사기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통한 신규성을 설명
-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 등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술적 독창성이나 기술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함

1)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가) 신청기술의 기술 내용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을 제시하고, 신청기술의 핵심내용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예) 특허출원 등					

※ 관련 지식(산업)재산권이 없는 경우 최초로 개발한 기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나)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분석

- 국내·외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을 조사하여 차별성 설명
- 신청기술과 특히 유사한 기술의 경우 상세내용이나 자료 첨부
- 신청서 접수 후 진흥원장이 선행건설기술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은 조사된 기술과의 차별성에 대해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번호	기존 기술명	기술내용	기존기술도면	신청기술도면	신청기술과의 차별성	비고
1						신기술 000호
2						특허

- ※ 신청기술과 기존 유사기술의 비교 도면을 첨부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설명
- ※ 비교대상 기술은 신청인이 임의로 조사하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과 기존 신기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비교란에는 신기술 지정번호, 특허 등록번호 등 기재(해당 시)
- ※ 기존기술명은 신청서 1. > 가. > 4). >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 보유자 등과 일치하여야 함

2) 독창성 및 자립성

- 선행공정 또는 작업조건에 영향이 적고 균질한 성능 발현 가능 여부
- 자재, 인력, 기술력 등이 환경변화에 영향이 적고 외국기술 및 타 기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이 우수한 정도를 설명

나. 진보성

1) 품질 향상

가) 품질의 목표 및 기준

- 신청기술과 관련되어 품질의 목표 및 기준(KS기준 등) 제시

관련 법규 및 기준		품질기준 세부내용	비 고
(예)법규	도로설계기준		
(예)KS기준			

※ “건설기준 통합코드”에 의한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참조

나) 신청기술의 품질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성능평가서, 연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품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 설명
- 신청기술 적용 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증 내용을 수록
-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현장책임자(또는 감리자)의 의견서, 시험자료, 사진 등을 별책 부록에 수록

다)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분석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품질이 향상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설명

2) 개량 정도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및 효과 등을 개량한 정도를 설명
- 전체 공정에서 신청기술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 설명

3) 안전성(safety)

-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유해요소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안전성의 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

4) 첨단기술성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절감·친환경 관련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과제) 성과물이거나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신청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 설명

※ 환경신기술, 녹색인증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과제)의 성과물이거나 스마트 건설기술은 해당 항목 최대점수 부여

3. 현장실사 계획

가. 현장적용 실적

1) 현장적용 목록

- 신청기술의 적용현장 목록을 모두 제시
- 특이사항이 있는 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설명자료 제시
 - 신청기술의 내용 중 일부만 적용한 경우
 - 기술개발 과정에서 적용한 현장으로서, 최종 신청기술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등

번호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원)	비고
1	○○○공사					()	예) 발주자확인
2						()	감리사확인
3						()	원도급자 확인
4						()	국·공립 시험시공자 확인

※ 「시공자」란에는 원도급사 및 시공사 모두 기재

2) 현장적용 실적 확인

- “1) 현장적용 목록” 중 실적증빙 확인주체(발주자, 시공사, 감리사 등)가 있는 현장을 기재하고, 부록에 해당증빙자료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 등에 따른 시험시공(Test Bed 등) 증빙자료 제시 가능

번호	공사명	확인주체	기관명	기관주소 및 연락처	담당부서	증빙자료
1	○○○공사	발주자	○○○	우() <도로주소명 표기> (000-0000-0000)	○○○	별책 000쪽
2	∴	∴	∴	∴	∴	별책 000쪽

※ 「확인주체」란에는 발주자, 감리기관 중 1개를 기재

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1) 목록

우선 순위	공 사 명	발주자/ 신청기술시공사	신청기술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원)	시공장소	비고
1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17.08.03~'18.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시공 예정
2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17.08.03~'18.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준공
3	∴	∴	∴	∴	∴

- 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전후로 현장실사 가능한 현장 5개소 이내로 제시
 - 현장 접근성, 공사규모,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제시
 - 시공중인 현장 및 준공 현장을 구분하여 제시
- 1차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필요 여부, 실사 시기 및 장소를 결정하므로
실사현장 목록이 변경된 경우 1차심사 전까지 진흥원 담당자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2) 실사 가능현장 현황자료

- 현장실사 후보지별로 공사 개요 및 현장설명 자료를 현장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각 현장에 대한 현장실사 가능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실사장소 우선순위	1								
신청기술 적용현장 개요	공사명		○현장사진									
	발주자 (감리자)											
	계약형태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기타										
	전체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시공규모											
	현장위치 (주소)											
	공사기간	(~) 총 일	○시공예정 ○시공중 ○준공									
	투입인원및 장비	〈인원〉 •기술공 : 인 •보통인부 : 인	〈장비〉									
현장설명	현장특징	※ 우선순위 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										
	하자발생	※ 하자발생 여부 및 보수 내용 설명										
	실사 가능 시기											
	실사 가능 공정	<table border="1"> <thead> <tr> <th>① 공정1</th> <th>② 공정2</th> <th>③ 공정3</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사 가능</td> <td>현장실사 가능</td> <td>현장실사 불가능</td> </tr> <tr> <td>사진</td> <td>사진</td> <td>사진</td> </tr> </tbody> </table>	① 공정1	② 공정2	③ 공정3	현장실사 가능	현장실사 가능	현장실사 불가능	사진	사진	사진	
① 공정1	② 공정2	③ 공정3										
현장실사 가능	현장실사 가능	현장실사 불가능										
사진	사진	사진										

※ 위 양식을 복사하여 실사현장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별로 작성

3)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 현장실사시 확인 할 사항을 신청인이 제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확정, 필요시 준공현장과 시공현장의 확인사항을 별도로 제시
- 현장적용내용(발주내용 포함)과 품질·성능·효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만 제시하고, 시험성적서 등 서류심사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적용자재 확인	섬유+혼화재	육안확인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슬럼프 플로우	00이상	현장시험	
⋮	⋮	⋮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섬유 혼입률	0.05 %이상	육안확인	
⋮	⋮	⋮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압축강도	00MPa 이상	비파괴시험	
⋮	⋮	⋮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현장우수성

1) 시공성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공정이 간소화되고, 시공이 간편한지 여부를 절차별로 설명
- 선행 및 후행 공정과의 간섭 여부 고려
 - ※ “건설기준 통합코드”에 의한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참조

2) 안전성(safety)

-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유해요소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안전성의 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

3) 구조안정성(stability)

-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만족하고, 환경이 변화하여도 기준 이상의 품질 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구조안전성의 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
 - ※ “건설기준 통합코드”에 의한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참조

4) 유지관리 편리성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 투입 빈도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

5) 환경성

- 각종 환경기준에의 부합성,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환경적 유해요소의 발생 여부와 기존 기술대비 환경부하량의 절감 정도 등에 대한 설명

나. 경제성

1) 설계·시공비 절감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과 신청기술의 시공절차를 도식화하여 해당 공종의 전체 공사비와 신청기술의 고유영역에 대한 공사비를 작성하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공종은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산출

〈 예 시 〉

예시① 신청기술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구분

기존 유사기술 시공절차	신청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청기술 고유영역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토목 6-3-2 합판거푸집	○ (장비개발)
⑤양생	⑤양생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⑥거푸집 탈영	⑥거푸집 탈영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⑦박리제 도포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⑧표면결함 보수	⑦표면결함 보수	토목 6-3-2 합판거푸집	

예시② 시공절차별로 품 작성

시공절차 세부항목①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출처②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m ²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m ³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				

(작성방법)

- ① “시공절차 비교표”는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 또는 인용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기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 ②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 및 인용된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 ③ 주지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를 작성
 - 신기술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한계)를 기술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장비가격, 연료소모량, 장비가격 등을 기술
 - 재료량 및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모두 기입

예시③ 시공절차별로 일위대가 작성

[작성예시]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단가			금액 (소요량×단가)			단가출처*	
	품명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m ²	0.47	8,062			3,789			3,789	건설물가 11.7 △△△쪽
	각재		m ³	0.018	299,400			5,389			5,389	가격정보 11.7 △△△쪽
	...											
	형틀목공		인	0.10				10,413			10,413	'11년 상반기 시중노임
	...											
계**												

예시④ 원가계산서에 작성 방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분석

2) 유지관리비 절감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 대비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LCC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효과 등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장비유지 관리 비용 등 직·간접적인 유지 관리 비용 절감 효과 등
- 기존 유사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 투입 빈도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유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
- 환경개선, 민원 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
 - ※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기술인 경우 유지관리비용의 산출을 생략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3) 공사기간 단축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 대비 공사기간 단축효과 등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시공절차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기존 유사기술의 공사기간과 상세하게 비교

다. 보급성

1) 시장성

가) 신청기술 관련 시장 동향

- 신청기술 적용 결과와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신기술 포함)을 비교하여 시장 규모, 수요, 기술경쟁 상황 등의 동향 기술
- 국내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국내외 수급(需給)동향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시장특성 및 구조, 유사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 해외시장 수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선호도와 활용가능성을 설명

나) 신청기술 관련 경쟁 우위 여부 및 시장 확대 가능성

- 향후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 및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 지속 여부, 시장 확대가능성 등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제시

2) 공익성

- 신청기술이 보급될 경우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과 공익성 측면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특성과 공익성 측면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5. 신기술시방서

- 신청기술과 관련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신청 기술의 현장 적용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시방서의 내용을 중점 기술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명	관리기관
설계코드	예시) 공동 설계기준 (KDS 10 0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시방코드	예시) 공동공사 (KCS 10 0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0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780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 시험기준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설명하기 바람

※ “건설기준 통합코드”에 의한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참조

6. 유지관리지침서

-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신청기술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유지관리지침 내용 기술

※ “건설기준 통합코드”에 의한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참조

7. 기술 사용 자격

-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개발자로부터 신기술사용협약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시하여 부적절한 사용자에 의한 신기술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함

1) 필요 면허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예시) 1. 토목공사업	예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예시) 1.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참조

2) 필요 장비

사용장비명	장비 성능 및 규격	신기술 핵심 장비	보유·임대
		예시) 일반장비	예시) 보유
		예시) 핵심장비	예시) 임대

※ 일반장비 :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 기재

※ 핵심장비 :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 중 신청기술의 범위와 관련된 핵심장비 기재

8. 신청인이 보유한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1) 선행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인이 동종분야의 신기술을 기존에 보유한 경우 해당 기술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설명
 - 도면, 사진 또는 개념도를 포함하여 설명
 - 기존 신기술(타 부처의 신기술 포함)을 개량하여 신청한 경우 기존에 개발한 내용과 신규로 신청하는 기술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구분		신청기술	선행 신기술
유사성	1.		
	2.		
차별성	1.		
	2.		

2) 불인정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구분	불인정시 지적사항	보완내용	관련 Page
1.			
2.			

- 불인정된 기술을 개선 보완 없이 재신청 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불인정시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보완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불인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위 표에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문에는 불인정 사유에 대한 개선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

〈별책 1〉 부록

가.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신기술 지정요건의 신규성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원부(출원사실증명원),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 ※ 특허등록원부 원본 또는 출원사실 증명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발행분부터 인정
 - ※ 예시) 특허의 목록 / 특허증 사본 / 특허등록원부 원본(출원사실 증명원) / 특허공보 순서로 삽입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신청인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간의 기술실시계약서(원본 대조필 날인) 및 건설신기술 신청 동의서 제출
 - ※ 기술실시계약 기간은 신기술 보호기간(최대 15년) 이상이어야 함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지식(산업)재산권의 등록원부(출원사실증명원) 및 명세서,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제출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내역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 제시(R&D 참여실적 증명서, 연구개발 협약서, 최종연도 연차실적 계획서의 요약문 및 참여연구원 리스트,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등)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기술 지정요건인 진보성(품질)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품질시험결과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 원본)를 첨부
 - 신청인은 품질검사결과 제출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증 사본 제출
 - *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 제시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제출

-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는 발주기관 또는 실적관리기관(전문건설협회, 발명진흥회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
- 발주기관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시공사(원도급사) 또는 감사사의 확인으로 증빙 가능(발주기관 확인 불가능사유서 첨부-개발자 직인)
 - 시공중인 공사 : 공사계약서 또는 기성실적증빙
 - 준공된 공사 : 공사실적증빙
- 자체시공 등으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 관련 공문, 현장실측 데이터 등 입증자료로 실적 증빙 가능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5504, 2017.12.26.)에 따라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된 ‘건설기술 시험시공’을 이행한 경우 해당 발주청·개발자간 시험시공 협약서

○ 공통사항

- 공사명과 신청기술명이 상이하거나, 실적증명서만으로 신청기술 적용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와 관련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기관의 직인이 아닌 감독관이나 현장 소장 등의 개인서명은 증빙 실적으로 불인정

바. 불인정 사유(불인정 기술 보완 신청서)

-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심사결과(불인정 사유) 공문 내용을 제시
- 불인정 사유에 대해 개선·보완한 내용은 신청서 본문에 설명

사. 기타 증빙자료

- 녹색인증서, 환경신기술 인정증서, 표창, 타기관 기술평가서 등 참고자료
- 기타 신청서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시험시공 실적(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을 제시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
- 신청서의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 보유자 등'의 표에 제시된 유사 신기술은 해당 신기술의 요약서, 유사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등록원부, 특허공보 등 기재

〈별책 2〉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
 - ※ 원가계산서 뒷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 제시 (용역기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9조에 따라 해당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첨부자료로 제시
-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 원가계산서 발급후 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재발급 필요
- [원가계산서]는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원가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측면>

<전면>

원
가
계
산
서

크기
16

2
0
0
0
·
0
(크기(10))

원 가 계 산 서

(크기30)

(명칭:○○○○○○)

(크기1(8))

(신청인:○○○○○)

(우측여백3cm, 크기1(3))

20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조사기관 : ○○○)

(크기20, 하부여백 5cm)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작성

04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등

1)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일반

- 신청서(책자)는 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 신청서(책자)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한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 신청서(책자)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 신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는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목차와 페이지를 작성
 -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7mm)
 - 제본 : 좌철, 무선제본
 - 신청서(책자)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활용실적증명서, (해당시)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2) 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서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작성

가) 접수번호, 접수일 등(공란)

나) 신기술 명칭 및 지정번호

- 신기술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는 “명칭” 및 “신기술 지정번호” 명기

다) 신청인

- 신기술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는 “개발자” 명기
- “가.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작성” 중 ‘다)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내용
참고

라) 신기술의 내용(요약)

- 신기술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술 내용” 명기

마) 신기술의 범위

- 신기술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술 범위” 명기

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책자) 작성 요령

〈측면〉

〈전면〉

보
호
기
간
연
장
신
청
서

크기
16

2
0
0
0
·
0
(크기10)

신
청
인

(크기12)

(권설신기술지정 제000호)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크기30)

(명칭:000000)

(크기18)

2000. 0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0000)

(크기20, 하부여백 5cm)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23.>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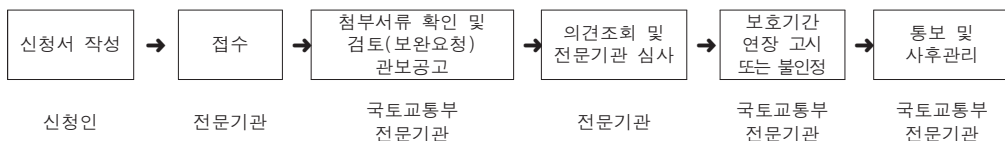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삽입

목 차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105
가. 기술개발 배경	105
나. 신기술의 내용	105
다. 신기술의 범위	105
1) 범위에 대한 설명	105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105
3) 범위 변경	105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106
가. 활용실적	106
1) 활용 건수 및 금액	106
2) 활용실적 분석	106
나. 기술의 우수성	107
1) 기술수준	107
2) 품질검증	107
3) 경제성	108
4) 시장성	109
5) 안전성	109
6) 환경성	109
7) 기술개량	109
다. 가점, 경감사항 등	110
1) 사후평가 결과	110
2) 해외 활용실적	110

3) 기술보급 노력	110
4) 기술가치평가 실적	110
5) 스마트건설기술 여부	111
6) 권고사항 이행여부	111
7) 경감사항 해당 여부	111
3. 현장실사 계획	112
가. 현장적용 실적	112
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112
1) 목록	112
2) 실사 가능현장 현황자료	112
3)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112
4.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113
1) 지정신청시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113
2)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추가, 소멸 등)	114
5. 신기술시방서	114
6. 유지관리지침서	114
7. 기술 사용 자격	114
<별책 1> 신청서 부록	115
가.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115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115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115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115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116
바. 신기술 활용 및 홍보실적 증빙자료	116
1) 활용실적	116
2) 홍보실적	116
사. 기타 증빙자료	116
〈별책 2〉 원가계산서	116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나. 신기술의 내용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다. 신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설명

〈‘신기술 지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함〉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신기술 지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함〉

3) 범위 변경

- 신기술 지정 이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한 내용을 범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작성
- 신규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음. 다만 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가. 활용실적

1) 활용 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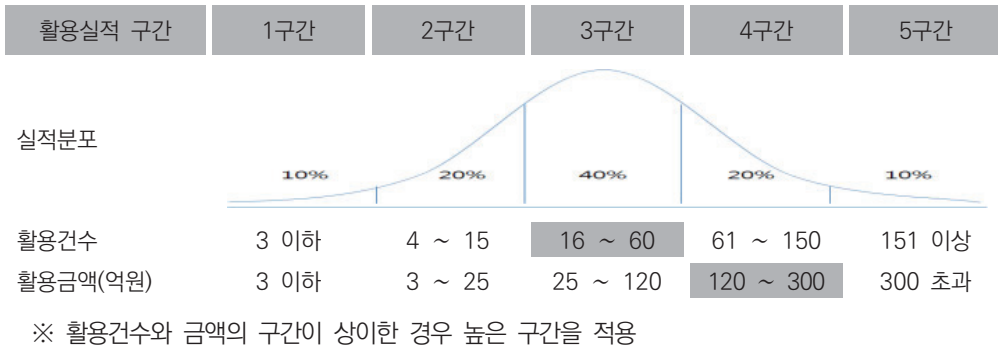
- 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상의 활용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전체 공사 중 일부만 신기술로 활용한 경우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 실적만 해당됨
- 다년도(2년 이상) 진행된 계속공사인 경우 1건으로 산정(공사비는 합산)

(단위 : 천원 , VAT포함)

번호	공 사 명	공사 기간	발 주 처	실적금액	지역	비고
■ 2000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1						
2						
■ 2000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3						
합 계				원		

2) 활용실적 분석

-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활용실적 구간을 표시하고, 신기술 지정 전후의 활용실적 비교,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실적에 대한 설명



나. 기술의 우수성

1) 기술수준

가)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분석

- 국내·외 동종의 유사 기술(신기술 포함)의 수준과 신기술의 기술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비교·분석
- 신기술지정 이후 해당 기술과 관련된 법규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나) 향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

- 국내·외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라 보완·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제시

2) 품질검증

가) 품질의 목표 및 기준

- 신기술과 관련되어 품질의 목표 및 기준(KS기준 등) 제시
- 신기술지정 이후 해당 기술과 관련된 법규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내용 수록

관련 법규 및 기준		품질기준 세부내용	비 고
(예)법규	도로설계기준		
(예)KS기준			

※ “건설기준 통합코드”에 의한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참조

나) 적용 현장에 대한 품질검증

-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기성보고 및 준공검사시 실시한 품질검증 내용을 수록
- 신기술지정 이후 해당 기술과 관련된 법규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현장책임자(또는 감리자)의 의견서, 시험자료, 사진 등을 별책 부록에 수록

다) 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

- 보호기간 동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한 성능 및 효과(시공성, 안전성 등)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3) 경제성

가) 설계·시공비,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

- 신기술 지정 이후 신규 개발된 기술과 국내외 건설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심사에서 경제성 재검토
- 원가계산서에 근거하여 경제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분석·제시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나) 향후 현장 활용을 통한 공기단축, 비용절감 가능성 등 분석

- 향후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기대되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효과 등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제시

4) 시장성

가) 신기술 관련 시장 동향

- 신기술 적용 결과와 동종분야의 유사기술(신기술 포함)을 비교하여 시장규모, 수요, 기술경쟁 상황 등의 동향 기술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나) 신기술 관련 경쟁 우위 여부, 시장 확대 가능성

- 향후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 지속 여부, 시장 확대가능성 등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제시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5) 안전성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6) 환경성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7) 기술개량

- 신기술 지정 이후 기술을 개량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기술의 범위를 변경요청 할 수 있음

다. 가점, 경감사항 등

1) 사후평가 결과

○ 기재하지 않음(진흥원에서 점수 산정)

2) 해외 활용실적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미만	500~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배 점	0.3	0.6	1

※ 활용건수와 금액 중 배점이 큰 값을 적용

3) 기술보급 노력

번호	행사명	일시	장소	전시 내용	비고
1					※ 주관, 주최, 후원 주체
2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한 전시회 및 설명회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서만 기술

4) 기술가치평가 실적

기술명	
신청인	
평가용도	
제출일자	

※ 신기술 지정 이후에 발급한 기술가치평가보고서만 해당

5) 스마트건설기술 여부

- 기재하지 않음(기존 건설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건설기술 여부 반영)

6) 권고사항 이행여부

- 신기술 지정시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행 내용을 설명(권고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7) 경감사항 해당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활용실적 미제출 등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3. 현장실사 계획

가. 현장적용 실적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1) 목록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2) 실사 가능현장 현황자료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3)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 현장실사시 확인 할 사항을 신청인이 제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확정, 필요시 준공현장과 시공현장의 확인사항을 별도로 제시
- 현장적용내용(발주내용 포함)과 품질·성능·효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만 제시하고, 시험성적서 등 서류심사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가) 현장적용 내용이 신기술의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적용자재 확인	섬유+혼화재	육안확인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나) 품질검증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슬럼프 플로우	00이상	현장시험	
⋮	⋮	⋮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섬유 혼입률	0.05 %이상	육안확인	
⋮	⋮	⋮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압축강도	00MPa 이상	비파괴시험	
⋮	⋮	⋮	

4.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1) 지정신청시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예) 특허출원 등					

2)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추가, 소멸 등)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신청서에 제시했던 지식(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내역을 작성하고 변동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예) 특허출원 등					

5. 신기술시방서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제시했던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 신기술 보호기간 동안 기술이 개량되어 일부 내용을 변경·추가·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원인과 비교표 작성

※ 최초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 필요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6. 유지관리지침서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7. 기술 사용 자격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별책 1〉 신청서 부록

가.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 원부(출원사실증명원) 및 명세서,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 ※ 특허등록원부 원본 또는 출원사실 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 예시) 특허의 목록 / 특허증 사본 / 특허등록원부 원본(출원사실 증명원) / 명세서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신청서에 제시했던 지식(산업)재산권에 관한 변동된 근거 자료 제시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 신기술 지정 이후에 현장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실시한 시험 또는 성능평가서만 해당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 국내·외 동종분야의 유사 기술(신기술 포함)과의 비교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항목별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바. 신기술 활용 및 홍보실적 증빙자료

1) 활용실적

○ 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를 제시

2) 홍보실적

○ 국가·지자체 주관, 주최 또는 후원 전시회, 설명회 참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참여사실확인서, 관련 공문, 사진, 기사 등

사. 기타 증빙자료

○ 기술가치평가서 등 기타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수록

〈별책 2〉 원가계산서

〈4.가.3)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 작성 요령〉의 해당 내용과 같음

다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책자 작성

04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등

1) 신기술 요약자료 작성 일반

- 요약자료는 국토부 보고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신기술별 요약서를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발주자 및 정부기관에 배부하거나, 각종 전시회 등에 배포되어 활용되는 자료임
- 요약자료는 신기술지정(연장)신청서, 원가계산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등을 참고하여 홍보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성실히 작성
- 요약자료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훈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 요약자료는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신기술의 기본 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를 첨부
-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7mm)

2) 신기술 요약자료 서식 작성 요령

(제○○○호) 신기술지정 정식명칭
(※ 글자크기 16, 신명조 진하게)

-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시 ○○구 ○○동 9-3 (Tel. 02-○○○-○○○○)
- 홈페이지 : www.○○○.○○○(이메일 : ○○○@○○○.○○○)
- 보호기간 : 20○○. ○○. ○○ ~ 20○○. ○○. ○○(○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2) 내용

※ 보호기간, 범위, 내용은 지정증서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최초 보호기간은 지정 이후 대한민국전자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8년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신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개념도, 상세도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공절차별로 시공방법을 기술

2. 국내의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신기술로 적용된 현장에 대해 발주자, 시공규모, 기간, 위치, 특징 등을 표로 정리하여 기술(활용실적이 많은 경우 연도별, 지역별 등으로 요약)

나. 향후 활용전망

※ 국내외 여건, 기술의 시장성, 활용가능분야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활용전망을 기술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신기술의 핵심내용과 최근 많이 알려진 유사기술의 성능, 기능 등을 요약 설명하되, 신기술과 유사기술을 비교하여 신기술의 수준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기존 시장에서 신기술이 보급될 가능성 및 동종분야 기술수준을 선도 또는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가능성 등을 기술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국내외 기술 대비 장점, 외국기술 대체 및 기술수출 가능성, 예상 해외시장 수요 및 기술로 수입 규모 등 기술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건설신기술품셈안에 따른 설계단가를 기술

2) 공사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가급적 표로 제시)

3) 공사기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가급적 표로 제시)

4) 유지관리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내구성, 수명연장, 안전성 증대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또는 생애주기비용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술(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기대효과를 기술(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3) 신기술 홍보용책자 작성 일반

- 신기술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보완
- 홍보용 책자 목차 앞에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 첨부
 - 신청시 제출했던 신청서 책자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신기술지정증서’로 교체하고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은 ‘신기술지정증서’ 상의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목차도 수정)
- 신기술 홍보용 책자 후면에는 신청인 소개·전화번호·주소(소재지) 등을 게재
-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시공영상, 사진 등을 포함한 홍보자료 제출
- 기술개발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진흥원에 필히 연락
-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공고내용, 도면 설계 및 시방기준 등 신기술관련 일체)을 수정 보완한 홍보용책자, 홍보용 동영상 등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신기술인증관리 시스템으로 제출

4) 신기술 홍보용책자 서식 작성 요령

(측면)

(전면)

<p>신기술 지정 제000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신 기 술 명 칭</p> <p>(크기 1(4) 2 0 0 0 · (크기(1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기 술 개 발 자 □ (크기1(2)</p>	<p>신기술지정 제000호(크기11, 진하게)</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5px;">지정 분야</td> <td style="padding: 2px 5px;">대분야-중분야-소분야</td> </tr> </table> <p>(좌측상단, 상부여백4cm)</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 20px 0;">신 기 술 명 칭</p> <p style="text-align: center;">(크기30, 진하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2000. 0 (지정년도, 월, 크기1(5)</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기술개발자:0000)</p> <p style="text-align: center;">(크기20, 하부여백 5cm)</p>	지정 분야	대분야-중분야-소분야
지정 분야	대분야-중분야-소분야		

※ 보호기간연장의 경우 '연장시의 연도, 월'로 작성하기 바람

[신기술지정 홍보용책자 목차]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삽입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계)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 1) 기술개발 환경
- 2) 기술개발 목표
- 3) 기술개발 과정
-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나. 신기술의 내용

- 1) 기술의 분야
- 2) 기술의 내용 요약
-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 4) 스마트 건설기술 부합성

다. 신기술의 범위

-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

- 1)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2) 독창성과 자립성

나. 진보성

- 1) 품질 향상
- 2) 개량정도
- 3) 안전성
- 4) 첨단기술성

3. 현장실사

가. 현장적용 실적

나. 현장실사 내용 요약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현장우수성

- 1) 시공성
- 2) 안전성
- 3) 구조안정성
- 4) 유지관리편리성
- 5) 환경성

나. 경제성

- 1) 설계·시공비 절감
- 2) 유지관리비 절감
- 3) 공사기간 단축

다. 보급성

- 1) 시장성
- 2) 공익성

- 5. 신기술시방서
- 6. 유지관리지침서
- 7. 기술 사용 자격

 - 가. 필요 면허
 - 나. 필요 장비

별책 1 : 신청서 부록

- 가.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바. 기타 증빙자료

별책 2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 홍보용 책자는 제본하지 않음(전자문서로만 제출)

(후면)

안 내

본 신기술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신기술 관련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자 : ○ ○ ○ ○ ○

○○도 ○시 ○구 ○로○길 ○○○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책자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ntech.kaia.re.kr)

[신기술보호기간연장 홍보용책자 목차]

04

신기술
신청서
작성
요령
등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삽입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계)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 1) 기술개발 환경
- 2) 기술개발 목표
- 3) 기술개발 과정
-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나. 신기술의 내용

- 1) 기술의 분야
- 2) 기술의 내용 요약
-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다. 신기술의 범위

-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3) 범위 변경(해당시)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가. 활용실적

- 1) 활용 건수 및 금액
- 2) 활용실적 분석

나. 기술의 우수성

- 1) 기술수준
- 2) 품질검증
- 3) 경제성
- 4) 시장성
- 5) 안전성
- 6) 환경성
- 7) 기술개량
- 8) 권고사항 이행여부

다. 가점, 감점 등

- 1) 사후평가 결과
- 2) 해외 활용실적
- 3) 기술보급 노력
- 4) 기술가치평가
- 5) 스마트건설 기술 여부
- 6) 감점 해당 여부

3. 현장실사 계획

가. 현장적용 실적

나. 현장실사 내용 요약

4.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가. 지정신청시 지식(산업) 재산권 내역

나.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추가, 소멸 등)

- 5. 신기술시방서
- 6. 유지관리지침서
- 7. 기술 사용 자격

 - 가. 필요 면허
 - 나. 필요 장비

별책 : 신청서 부록

- 가.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바. 신기술 활용 및 홍보실적 증빙자료
- 사. 기타 증빙자료

※ 홍보용 책자는 제본하지 않음(전자문서로만 제출)

(후면)

04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등

안 내

본 신기술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신기술 관련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자 : ○ ○ ○ ○ ○

○○도 ○시 ○구 ○로○길 ○○○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책자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ntech.kaia.re.kr)

PART
05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및 기관별 업무

가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나 기관별 업무



건설신기술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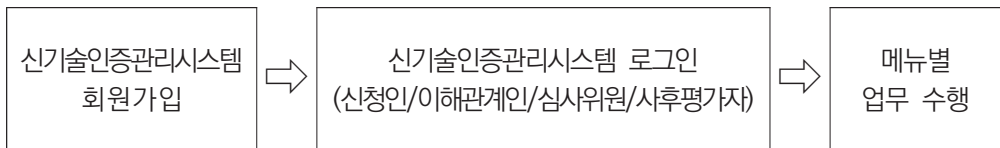
PART
05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및 기관별 업무

가 신기술 관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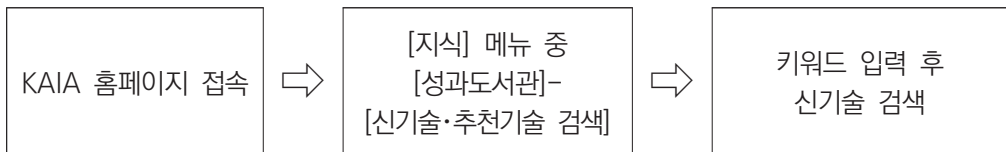
1)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주소 : ntech.kaia.re.kr
- 주요 서비스 내용
 - 신기술 신청·접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 의견제출, 지정 및 연장심사,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등



2) 신기술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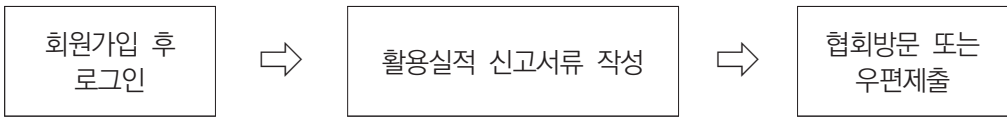
- 홈페이지 주소 : www.kaia.re.kr
- 주요 서비스 내용
 - 제도안내, 접수안내, 심사절차, 관련법규, 지원제도, 규정 및 서식, 공고 및 공지사항, 신기술 현황, 신기술 검색 등



3) 신기술 활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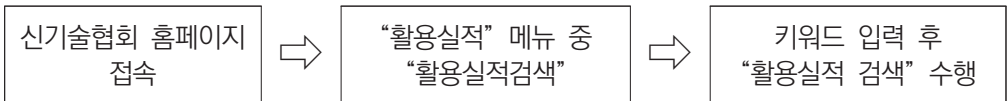
가) 활용실적 신고

- 홈페이지 주소 : siljuk.kcna.or.kr
- 주요 서비스 내용
 -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 및 신고서 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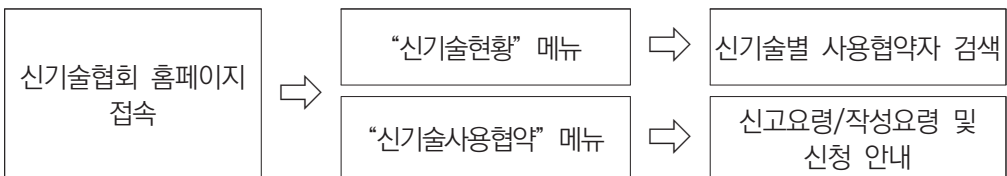
나) 활용실적 검색

- 홈페이지 주소 : www.kcna.or.kr
- 주요 서비스 내용
 -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 실적통계 및 신기술별 활용실적 정보 제공 등



4) 신기술사용협약

- 홈페이지 주소 : www.kcna.or.kr
- 주요 서비스 내용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 개요, 신고요령/작성요령, 신청 안내 및 협약자 현황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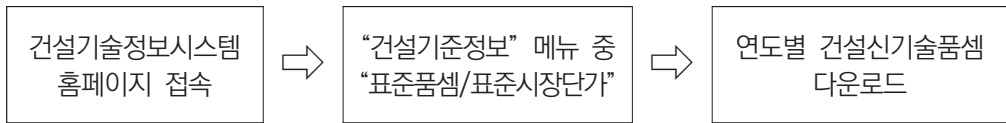


5) 건설신기술품셈

○ 홈페이지 주소 : www.codil.or.kr

○ 주요 서비스 내용

- 건설신기술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분야별·연도별 적용 건설
신기술품셈 제공



나 기관별 업무

주요 역할	담당기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p>신기술 업무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 지정·고시 및 증서 발급 - 사후평가 결과 관리 	<p>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p>	<p>044-201-3558 (Fax : 044-201-5551)</p>
<p>신기술 심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지정(연장)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토 - 신기술 심사 전문가그룹 구축 - 신기술 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 홍보 및 사후관리 	<p>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p>	<p>총괄(031-389-6481, 6391) 심사(031-389-6454, 6483, 6475) (Fax : 031-381-4994)</p>
<p>신기술 활용실적 및 협약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 	<p>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p>	<p>활용실적(02-516-2491) 협약자(02-516-2649) (Fax : 02-516-5090)</p>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안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 총괄관리(031-389-6481, 6391), 심사관리(031-389-6475, 6483, 6454)
- 주소 :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4층 기술인증센터

2)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안내

- 신기술활용실적 및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문의
 - 신기술활용실적(02-516-2491), 신기술사용협약(02-516-2649)
- 주소 : (우065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B동 1016호

PART
06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 가 건설기술 진흥법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바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 사 (국토교통부)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아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 자 신기술 관련 서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서식]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서식]
 -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건설신기술 매뉴얼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 관련 조항 발췌)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제13조 (생략)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8. 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제17조 (생략)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1. 3. 16.>

1.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
2.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관한 자료
3.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4.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5.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78조 (생략)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제80조의2 (생략)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 (생략)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2018. 8. 14., 2020. 6. 9.>

- 1~4. (생략)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85조~제88조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5. 5. 18.,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2~6. (생략)

제90조~제91조의2 (생략)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 관련 조항 발췌)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조~제30조 (생략)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1. 9. 14., 2024. 4. 23.>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 나.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단전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성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생략)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 및 보급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제116조 (생략)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 12.,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1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1., 2020. 12. 1.>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4. (생략)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생략)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 관련 조항 발췌)

[시행 2024. 4. 23.] [국토교통부령 제1325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1조~제6조 (생략)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

제13조~제27조 (생략)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생략)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대상용역

가.~나. (생략)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생략)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1. ~ 4. (생략)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① ~ ③ (생략)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45조~제62조 (생략)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1.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신청·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금액(1건당)
1차심사수수료	1,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000,000원

비고

1. 삭제<2022. 12. 30.>
2.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3호의2 관련)

구분	금액(1건당)
신청 수수료	20,000원

비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낸다.

3. (생략)

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신기술 관련 조항 발췌)

[시행 2023. 12. 28.] [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생 략)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 ⑦ (생 략)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42조 (생 략)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제1장 정 의

제43조(정의)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 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정한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7.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44조(적용범위) 제3편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제2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0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1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5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2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53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제5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제80조 (생략)

제5편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공사비산정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3.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6. 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
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개정
9.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 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제84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8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

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표19에 따라 출연금 집행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제93조 (생략)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제97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 ②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공사비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사비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업무의 사업결과보고서(출연금 집행실적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52조 (생략)

[별표 15]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8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신기술심사위원회는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1조, 규칙 제7조 및 본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35조제3항, 규칙 제11조 및 본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은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9. "공모형 신기술"이라 함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발주청의 수요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제3조(신청인의 자격) ①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모형 신기술은 제19조의2의 신기술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②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 ③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

-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개량 정도, 안전성,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다. 삭제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현장적용성)

- 가. 현장우수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나.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다.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3.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기술가치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설명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③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기준 중 세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의2(공모형 신기술) 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 발주청에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모형 신기술의 수요가 있는 경우 신기술 범위, 신청자격 등을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신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에게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이 있는 경우, 제19조의2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형 기술의 범위, 신청자격 등 공모형 신기술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공모를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모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은 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공모에 신청 접수된 기술이 발주청이 요구한 신기술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장은 제6항에 따른 발주청의 검토결과 신청기술이 발주청의 신기술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기술이 공모형 신기술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고, 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의 진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공모에 신청한 기술 중 발주청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나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진흥원장은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신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⑩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① 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4호의 서류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 이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31조제5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삭제
2.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증인 현장 또는 준공현장의 목록과 해당 실적증빙 자료. 다만 설계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4. 신청인(공동신청인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신청인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차별성, 개량내용, 우수성 등 비교 분석 자료
7.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 진흥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④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⑤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점검, 안내 등을 위하여 기술분야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장신청의 접수)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3.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적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⑤ 진흥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7조(공고) ① 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 제32조의제3항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범위 및 보호기간

③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④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 ⑤ 진흥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진흥원장은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대표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의견조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1. 영 제32조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65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
 -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
 - 4.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제9호의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제4의3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은 모두 회신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진흥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진흥원장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원가계산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보완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신규성, 진보성
- 3. 기타 진흥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등 사전검토 결과를 1차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1차심사 인정으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1차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실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 계획서
- ④ 진흥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⑥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로 인증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 기술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관정을 받은 결과물로서 제5조에 따라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이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기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기준 중 첨단기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연장신청의 심사) 진흥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 제12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① 진흥원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
 2. 영 제31조제6호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 진흥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현장실사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연장신청의 현장실사) ① 진흥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품질검사)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2차심사위원회

제15조(지정신청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현장적용성(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2.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신청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품질검증·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

4.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및 별지 제10의3호서식의 종합의견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8년으로 한다.

②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진흥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1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불인정"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②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부도·폐업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존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
3. 부도·폐업 등으로 신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다만, 승계자는 해당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제한한다.
4. 보호기간 또는 기술범위가 조정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9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

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9조의2(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신기술 지정 정책에 관한 사항
2. 신기술 활용·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모형 신기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기술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신기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신기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술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3.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3(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진흥원장은 신기술 범위조정 및 지정취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자로부터 보호기간 중 신기술의 일부 개량 등의 사유로 신기술 범위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중 각 1회 신청 가능하며, 핵심기술·재료·장비·시공법 등이 변경되어 신규 지정심사에 준하는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이 기술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진흥원장 또는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 범위의 조정, 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의결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범위의 조정이나 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에 기술개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자를 반드시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범위를 조정하거나 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영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지정번호 및 기술개발자
2. 신기술 명칭 및 범위
3. 신기술 보호기간

⑦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신기술 지정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활용실적 제출)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 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0조의2(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지정 신기술의 품질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후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진흥원장은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사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조사반(이하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 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의2호, 제9의2호, 제10의3호 내용 중에서 위원회 종합의견은 신청인 및 제8조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진흥원장은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

5.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기관에 소속(최근 3년내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된 자

6.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③ 진흥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접수 받아 심사위원 선정시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으로부터 신기술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요청받은 전문가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지정 신청기술이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수당의 지급 등) ① 진흥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심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원가계산·변리사·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① 진흥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7. 건설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8.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10.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1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12.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② 진흥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제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진흥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진흥원장이 인정하

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 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조사 등 추가조사 여부를 의결할 수 있고,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5인 이상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추가조사를 실시하기 전 민원인 및 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사방법, 조치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⑧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① 진흥원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시방서 등 변경 금지) ①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방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효력) ① 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신기술 지정

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재발급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기간은 재발급 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733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806호, 2014.12.10, 일부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8-55호, 2018. 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28호, 2019. 5.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49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신기술의 평가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2-585호, 2022. 10.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신기술의 평가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서식

- [별표 1] 지정 및 연장심사 평가기준(제10조, 제15조, 제17조 관련)
- [별표 2]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조정기준(제20조 관련)
- [별지 1] 이해관계 의견서
- [별지 2]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 [별지 3] 관계기관 의견서(기술검토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별지 4] 관계기관 의견서(발주청 / 감리자 검토용)
- [별지 5] 관계기관 의견서(선행기술조사 결과서)
- [별지 6] 1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별지 6의2] 1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별지 7] 삭제
- [별지 8] 현장실사 의견서(지정신청)
- [별지 9] 2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별지 9의2] 2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별지 10]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별지 10의2] 심사의견서
- [별지 10의3] 2차심사 종합의견서(연장신청)
- [별지 11] 청렴서약서(신청인)
- [별지 12] 청렴서약서(이해관계인)
- [별지 13] 청렴서약서(심사위원)
- [별지 14] 각서(이해관계인)
- [별지 15] 신기술 지정증서(스마트 건설기술)
- [별지 16] 신기술 지정증서

[별표 1]

지정 및 연장심사 평가기준(제10조, 제15조, 제17조 관련)

1. 지정심사 평가기준

가. 1차심사위원회 심사항목 및 기준

- 1) 1차심사 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신규성 및 진보성 각 심사항목에 대해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인정"한 경우 1차심사를 "인정"으로 의결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인정"	"불인정"
신규성	50점	35점 이상	35점 미만
진보성	50점	35점 이상	35점 미만

2)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규성 (50)	기존기술과 차별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수준에 따라 배점	25
	독창성과 자립성	현장여건과 외국기술 및 타 기술 등에 대한 독립성과 자립성 수준에 따라 배점	25
진보성 (50)	품질 향상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품질이 향상된 정도에 따라 배점	15
	개량 정도	동종분야의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및 효과 등을 개량한 정도에 따라 배점	15
	안전성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의 안전대책 마련 수준과 유사기술 대비 안전성의 개선 정도에 따른 배점	10
	첨단기술성	동종분야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기술성 정도에 따라 배점	10

가) 신규성(50점)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기존기술과 차별성 (25)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21~25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높음	16~20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보통	11~15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낮음	6~10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1~5
독창성과 자립성 (25)	현장여건이나 외국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해 독립성과 자립성이 매우 높은 기술	21~25
	현장여건이나 외국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해 독립성과 자립성이 높은 기술	16~20
	현장여건이나 외국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해 독립성과 자립성이 보통인 기술	11~15
	현장여건이나 외국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해 독립성과 자립성이 낮은 기술	6~10
	현장여건이나 외국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해 독립성과 자립성이 매우 낮은 기술	1~5

나) 진보성(50점)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품질 향상 (15)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임	13~15
	기존기술 대비 품질이 크게 향상된 기술임	10~12
	기존기술 대비 품질 향상이 보통인 기술임	7~9
	품질수준이 기존기술과 유사한 수준임	4~6
	품질수준이 기존기술보다 미흡함	1~3
개량 정도 (15)	해당 공정의 주요 성능을 크게 개선시킨 기술임	13~15
	해당 공정의 주요 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임	10~12
	해당 공정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임	7~9
	해당 공정의 성능 개선이 기존 기술과 유사함	4~6
	해당 공정의 성능 개선이 기존 기술에 미치지 못한 기술임	1~3
안전성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기술임	9~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기술임	7~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의 일부 항목이 개선된 기술임	5~6
	기존기술과 안전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3~4
	기존기술보다 안전성이 미흡함	1~2
첨단기술성 (10)	환경신기술, 녹색인증,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함	10
	스마트 건설기술과의 관련성 등 첨단기술성이 높은 기술임	8~9
	스마트 건설기술과의 관련성 등 첨단기술성이 보통인 기술임	6~7
	스마트 건설기술과의 관련성 등 첨단기술성이 낮은 기술임	4~5
	스마트 건설기술과의 관련성 등 첨단기술성이 매우 낮은 기술임	1~3

※ 스마트 건설기술,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및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에 10점을 부여

나. 2차심사위원회 심사항목 및 기준

- 1) 2차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면 2차심사 “인정”으로 의결한다.
- 2)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현장 우수성 (70)	시공성	기존기술 대비 공정의 간소화 등 시공성 개선 수준에 따라 배점	20
	안전성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의 안전대책 마련 수준과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의 개선 수준에 따른 배점	10
	구조안정성	기존기술에 비해 구조안정성 개선 수준에 따른 배점	15
	유지관리 편리성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 투입 빈도나 편리성 개선 수준에 따라 배점	15
	환경성	환경기준에의 부합성 및 기존기술 대비 환경부하량 저감 수준에 따라 배점	10
경제성 (15)	설계·시공비 절감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비 절감 수준에 따라 배점	5
	유지관리비 절감	기존기술 대비 생애주기 내 유지관리비 절감 수준에 따라 배점	5
	공사기간 단축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 수준에 따라 배점	5
보급성 (15)	시장성	시장성(잠재 시장규모, 기술 경쟁력, 경쟁우위 지속 가능성 등)에 따라 배점	10
	공익성	기존기술 대비 공익성 수준에 따라 배점	5
종합점수			100

가) 현장우수성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시공성 (20)	기존기술 대비 해당 공정 전반에 대한 시공성 개선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17~20
	기존기술 대비 해당 기술의 시공성 개선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13~16
	기존기술보다 해당 기술의 시공성이 일부 개선된 기술임	9~12
	기존기술과 시공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5~8
	기존기술보다 시공성이 미흡함	1~4
안전성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기술임	9~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기술임	7~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일부 향상된 기술임	5~6
	기존기술과 안전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3~4
	기존기술보다 안전성이 미흡함	1~2
구조안정성 (15)	기존기술 대비 구조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임	13~15
	기존기술 대비 구조안정성이 우수한 기술임	10~12
	기존기술 대비 일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 개선된 기술임	7~9
	기존기술과 구조안정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4~6
	기존기술보다 구조안정성이 미흡함	1~3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유지관리 편리성 (15)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의 편리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임	13~15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의 편리성이 우수한 기술임	10~12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의 편리성을 일부 개선한 기술임	7~9
	기존기술과 유지관리 편리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4~6
	기존기술보다 유지관리 편리성이 미흡함	1~3
환경성 (10)	기존기술 대비 환경부하량 저감효과가 매우 우수한 기술임	9~10
	기존기술 대비 환경부하량 저감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7~8
	기존기술 대비 환경부하량 저감이 보통인 기술임	5~6
	기존기술 대비 환경부하량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3~4
	기존기술보다 환경부하량 저감이 미흡한 기술임	1~2

나) 경제성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설계·시공비 절감 (5)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비 절감 효과가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비 절감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4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비 절감 효과가 보통인 기술임	3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비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2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비 절감이 미흡한 기술임	1
유지관리비 절감 (5)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4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보통인 기술임	3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비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2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비 절감이 미흡한 기술임	1
공사기간 단축 (5)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4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보통인 기술임	3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2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한 기술임	1

다) 보급성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시장성 (10)	수출 및 신규 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중장기 수급 전망이 매우 양호한 기술임	9~10
	국내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수급 전망이 양호한 기술임	7~8
	국내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기술임	5~6
	일부 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기술임	3~4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이 높아 시장성이 미흡한 기술임	1~2
공익성 (5)	기존기술 대비 공익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 대비 공익성이 우수한 기술임	4
	기존기술 대비 공익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3
	기존기술 대비 공익성이 낮은 기술임	2
	기존기술 대비 공익성이 매우 낮은 기술임	1

2.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평가기준

가.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 평가점수	80이상~100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 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20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0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환경성	기존 기술 대비 환경부하량 절감 정도 등에 따른 배점	5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기술가치평가, 스마 트건설기술 여부,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가) 활용실적(최대 30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배점한도	0 ~ 6	7 ~ 12	13 ~ 18	19 ~ 24	25 ~ 30

※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한도를 반영

나) 기술의 우수성(70점)

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수준 (20점)	선진외국기술(100%기준)을 능가하는 수준	17~20
	선진외국기술(100%기준)과 동등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	13~16
	국내 기존기술보다 10% 이상 우수한 수준	9~12
	국내 기존기술과 동등한 수준	5~8
	국내 기존기술보다 미흡한 수준	1~4
품질검증 (15점)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13~15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개선	10~12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검증 완료	7~9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	4~6
	신기술 지정 이후 품질검증 미실시 또는 자료 없음	1~3
경제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30% 이상 높음	9~10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20% 이상 높음	7~8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10% 이상 높음	5~6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유사	3~4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1~2
시장성 (5점)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30% 이상 높음	5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20% 이상 높음	4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10% 이상 높음	3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과 유사	2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
안전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30% 이상 높음	9~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20% 이상 높음	7~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10% 이상 높음	5~6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유사	3~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미흡	1~2
환경성 (5점)	기존기술 대비 환경성이 30% 이상 높음	5
	기존기술 대비 환경성이 20% 이상 높음	4
	기존기술 대비 환경성이 10% 이상 높음	3
	기존기술 대비 환경성이 유사	2
	기존기술 대비 환경성이 미흡	1
기술개량 (5점)	지정시 대비 30% 이상 개량·개선	5
	지정시 대비 30% 이내에서 개량·개선	4
	지정시 대비 20% 이내에서 개량·개선	3
	지정시 대비 10% 이내에서 개량·개선	2
	지정시 대비 개량·개선되지 않음	1

2) 가점

가)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0	1	2	3	4	5
100~105점 미만	105~115점 미만	115~120점 미만	120~125점 미만	125~130점 미만	130점 이상

나) 해외활용실적(1점)

(건, 만\$)

구 분	배 점		
	0.3	0.6	1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 해외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점수를 반영

다) 기술보급노력(1점)

홍보실적	배 점		
	0	0.5	1
	5건 미만	5~15건 미만	15건 이상

라) 기술가치평가(1점) : 기술평가기관이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시

마) 스마트건설기술 여부(1점)

스마트건설기술	배 점	
	0	1
	스마트건설기술 미해당	스마트건설기술 해당

바) 권고사항 이행 여부 (1점)

권고사항 이행 여부	배 점	
	0	1
	권고사항이 없거나 이행 미완료	권고사항 이행

※ 비고

1.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종합평가점수로 하며,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심사위원회는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과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 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상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2]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조정 기준

(제20조 관련)

금액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400억 미만	400억~ 600억 미만	600억 이상
단축기간	0.5년	1년	1.5년	2년	3년

바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5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
 2.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안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신기술사용협약 기간) 제4조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활용실적)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국토교통부)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19. 8.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1호, 2019. 8.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6.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②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행정안전부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
10.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
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은 상시 신청·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이하 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별표1]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번호와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인증절차 및 서식) ① 인증의 절차는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인증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의2(신속인증심사)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 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①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제10조의2(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기술·신제품인증 신청현황
2. 신기술·신제품인증 발급현황
3. 신기술·신제품 활용실적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461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별표1]

신기술인증 표시방법(제7조①항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 가. 크기 :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인증서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색상 :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 (DIC No. 142)으로 한다.

[별표2]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7조②항 관련)

1. 도안 모형



(예시) 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1. 인증번호: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예) 농림식품 신기술-2013-0001
 *신기술명 : 농림식품 신기술, 수산식품 신기술, 보건 신기술, 환경 신기술, 건설 신기술, 교통 신기술, 방재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등
2. 제품명 :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2. 도안 요령

- 가. 크기 : 표시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색상 :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3]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

구 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서류·면접 심사	100만원
	현장 심사	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가능
	종합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면접 심사	100만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100만원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함

아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신기술 관련 조항 발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1.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 카. (생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가. ~ 라. (생략)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바. ~ 차. (생략)
4. ~ 5. (생략)
- ②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내용이 유사하여 생략함

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0.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7. 4., 2014. 1. 10., 2015. 9. 21.>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15., 2012. 7. 4.>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 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 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비율(%)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1.>

제4조(하도급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③ <삭제 2014.1.10.>

[본조신설 2012.7.4.]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3.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0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9. 21.>

자 신기술 관련 서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기술 지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신기술사용협약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 [운영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 [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 [운영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 [운영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 [평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
- [평가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 [평가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기술검토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평가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관계기관의견서(발주청 / 감리자 검토용)
- [평가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선행기술조사 결과서)
- [평가규정 별지 제6호 서식] 1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6의2호 서식] 1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사 의견서(지정신청, 연장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9호 서식] 2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9의2호 서식] 2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2차심사 평가서(연장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10의2호서식] 심사의견서
- [평가규정 별지 제10의3호 서식] 2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서약서(신청인)
- [평가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서약서(이해관계인)
- [평가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청렴서약서(심사위원)
- [평가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각서(이해관계인)
- [평가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기술 지정증서(스마트 건설기술)
- [평가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서식]

- [신기술협약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신기술협약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 [매뉴얼 제1호 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 [매뉴얼 제2호 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 [매뉴얼 제3호 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매뉴얼 제4호 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매뉴얼 제5호 서식] 원가계산서
- [매뉴얼 제6호 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 [매뉴얼 제7호 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 [매뉴얼 제8호 서식]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 [매뉴얼 제9호 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 [매뉴얼 제10호 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 [매뉴얼 제11호 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 [매뉴얼 제12호 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 [매뉴얼 제13호 서식]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신청인)
- [매뉴얼 제14호 서식] 신기술기술범위 조정 신청서

| PART 06 |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 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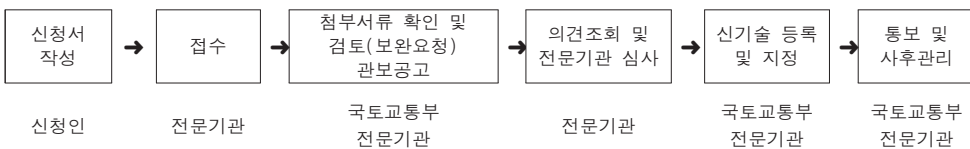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오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7.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14일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칭				
기술 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신기술 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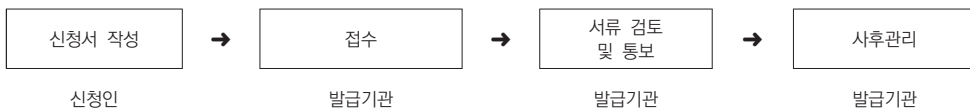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1. 신기술사용협약서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1부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20,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9. 17.>

신기술사용협약서

1. 신기술 개요

- 가. 신기술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 나. 신기술명칭:
- 다. 기술개발자:
- 라. 신기술범위:
- 마. 보호기간:

2. 협약내용

- 가. 협약기간:
- 나. 협약범위:
-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 라. 공사품질 관리:
- 마. 자재수급:
- 바. 기 술 료:
- 사.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약에 따라 기타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의2에 따라 이 신기술사용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신기술사용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술개발자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신기술사용협약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19. 7.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록번호 제	호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기 술 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기 술 범 위		
신기술 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발자):
- 보호 기간: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지정번호	번호		지정일	
신청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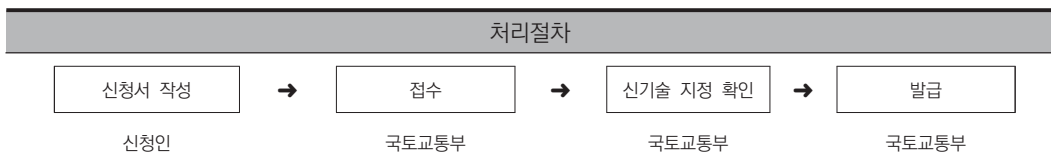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06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9.>

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 명칭		신기술 지정번호											(서명 또는 인)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자 [] 신기술개발자 [] 신기술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① 일련 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④ 업체 분류	⑤ 발주자 분류	⑥ 기술 분야	⑦ 지역	⑧ 계약 형태	⑨ 계약 관계	⑩ ※ 활용 형태	⑪ 계약 연월일	⑫ ※ 착공 연월일	⑬ ※ 준공 연월일	⑭ ※ 해당 연도 계약액 또는 이 월금액	⑮ ※ 해당 연도 활용금액	비고
합 계															
첨부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급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급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급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적습니다. 2. ※ 표시가 있는欄은 뒤첨의 해당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 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순으로 적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해당 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량지(80g/㎡))

(위쪽)

※ ④ 인태분류		※ ⑤ 발주자 분류		5. 민간 6. 그 밖의 발주자	
1. 종합건설업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준정부기관	4. 교육기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9. 경기도교육청 4-10. 강원도교육청 4-11. 충청북도교육청
2. 전문건설업	1-1. 국토교통부	2-1. 서울특별시	3-1. 한국도로공사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12. 충청남도교육청
3. 기술응역(건축사·기술사무소 및 유지관리·관리 등)	1-2. 국방부	2-2. 부산광역시	3-2. 한국전력공사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13. 전라북도교육청
4. 공기업, 준정부기관	1-3. 환경부	2-3. 대구광역시	3-3. 한국수자원공사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14. 전라남도교육청
5. 연구소	1-4. 그 밖의 기관	2-4. 인천광역시	3-4. 한국수력원자력공사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15. 경상남도교육청
6. 개인	2-5. 광주광역시	2-5. 대전광역시	3-5. 한국전력공사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16. 경상북도교육청
7. 그 밖의 업체	2-6. 대전광역시	2-6. 세종특별자치시	3-6. 국가철도공단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7. 울산광역시	2-7. 울산광역시	3-7.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18. 그 밖의 교육기관
	2-8. 세종특별자치시	2-8. 세종특별자치시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9. 경기도	2-9. 경기도		4-9. 경기도교육청	
	2-10. 강원도	2-10. 강원도		4-10. 강원도교육청	
	2-11. 충청북도	2-11. 충청북도		4-11. 충청북도교육청	
(건축)	※ ⑥ 기술분야	※ ⑦ 지역	※ ⑧ 계약형태	※ ⑨ 계약관계	※ ⑩ 활용형태
1.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서울특별시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 도급계약	1. 시공
2. 도로: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성계, 철도, 등항	2. 도로: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성계, 철도, 등항	2. 부산광역시	2. 지정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하도급계약	2. 설계
3. 교량: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	3. 교량: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	3. 대구광역시	3.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지정공사	3. 기술사용료
4. 토목구조 및 시공: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	4. 토목구조 및 시공: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	4. 인천광역시	4. 수의계약	4. 그 밖의 계약관계	4. 그 밖의 활용 형태
5. 항만 및 호안: 항만, 호안	5. 항만 및 호안: 항만, 호안	5. 광주광역시	5. 그 밖의 계약 형태		
6. 토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	6. 토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	6. 대전광역시			
7. 상하수도: 관로, 관설, 설계	7. 상하수도: 관로, 관설, 설계	7. 울산광역시			
8. 환경 및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매립, 잔형처리,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	8. 환경 및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매립, 잔형처리,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	8. 세종특별자치시			
9.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9.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9. 경기도			
(그 밖의 분야)	10. 그 밖의 분야: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등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8. 해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량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 활용지위 []개발자 []사용협약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 반영 기성실적(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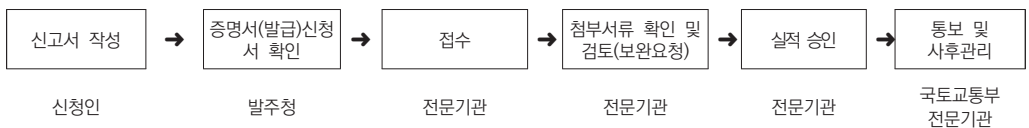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 ②,③의 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23.>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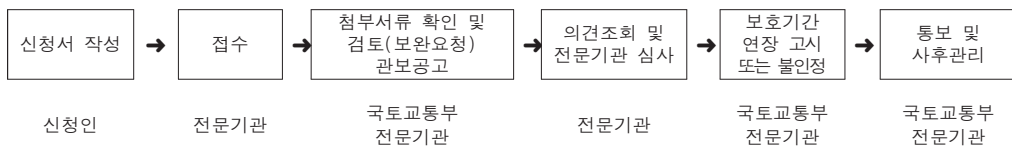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PART 06 |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서식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번호	심의일	신기술명 (지정번호)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요약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공사명	신기술 공사비	계약 형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술 명	(지정번호 :)			
기술개발자				
공사개요	발주자	사공자		
	개발자 참여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input type="checkbox"/>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 공사비	원
	총공사기간	~	신기술 공사기간	~

2. 활용 평가

평가시기	<input type="checkbox"/> 준공 <input type="checkbox"/> 하자 보수공사 준공
------	---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공사비절감	단위당 관련된 비용(사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						
	구분	기존 기술(A)	신기술(B)	공사비 절감(A-B)			
	단위 수량 ()	원	원	원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							
공기단축	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						
	구분	기존 기술(A)	신기술(B)	단축일수(A-B)			
	단위 수량 ()	일	일	일			
공기단축 평가점수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							
사공성	세부 평가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동등	미흡	매우미흡
	<input type="checkbox"/> 시공용이성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신기술시방서 준수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타공종과 간섭 축소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사공성 평가점수 : () - 사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품질향상	<input type="checkbox"/> 내구성 향상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시공상의 하자 저감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품질향상 평가점수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 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친환경성	<input type="checkbox"/>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련 민원 저감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친환경성 평가점수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 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안전사고 저감 효과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안전성 평가점수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 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계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전성의 총합 (최대 150점)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I. 신청자 정보

작성기관		부 서	
성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II. 신청 신기술 개요

2-1. 신기술명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 상 귀사의 **신기술 고유범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는 신기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신기술의 고유영역을 독립적인 시공프로세스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대상 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시공절차 비교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비교대상 기존기술 설명

* 비교대상 기술의 적정성 설명

기존기술 명 :
 기존기술 특성 및 신기술 대체 적정성
 -
 -
 -

* 비교대상 기술은 아래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특성 보유

**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 또는 기존 신기술

* 표준품셈 : www.kict.re.kr → 국토교통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 건설공사표준품셈

[작성예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예시1) 참고하고 있는 표준품셈 상세히 제시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구체화 필요)	
	②특수시트 부착	자사기준	○
②거푸집 조립	③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4회)	
③콘크리트 타설	④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무근/50㎡미만)	
예시2) 신기술 영역 세분화 제시			
③말뚝시공	③ 말뚝시공 - 일렬말뚝 - H말뚝 - 킵형 유공강판보강재 사용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 신기술 고유영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시공 절차 분리 필요	
↓	↓		
③말뚝시공	③ 말뚝시공-일렬 H말뚝		
-	④ 킵형 유공강판보강재		○

3-2 시공절차 비교표 설명자료

“3-1 시공절차 비교표”에 제시하신 기존기술 및 신기술 시공절차의 **세부 항목별 설명** 자료를 사진 또는 **도해(圖解)** 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

(단위)

시공절차 세부항목 ^①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②	출처 ^③
	품명	규격			

[주^④] ①

②

③

⋮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가. 항목명 : 유 형 : 조정사유 : 조정내용 : 나. 항목명 :	

* 자사기준 적용 품 유형

- ** 1. 현장실사에 의한 조사 값 적용 : 실사내용(조사기준) 간략 설명
- ** 2. 유사 관련 기준 응용 : 응용한 품 기준 및 증감사유 설명
- ** 3. 개발 또는 신규장비 적용 : 손료산정기준 설명

① “3-1 시공절차 비교표”의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아래 예시 첫칸)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② 소요량 적용기준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양식변경 또는 별지 사용

③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분,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 (자사기준 등) 기술

④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등, 설계시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작성예시]

(m²)

시공절차 세부항목 ^①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②	출처 ^③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m ²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m ³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②특수시트부착	시트재료		m ²	1.252	자사기준
	보통인부		인	0.042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및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동바리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예시)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 항목명 : ②특수시트부착

유 형 : 유사 관련 기준 응용(관련품셈 건축 13-6-1 합성고분자 시트)

조정사유 : 현행품의 경우 방수공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공이 단순화되어 보통인부로 시공가능

조정내용 : 방수공 삭제, 현행품셈 방수공+보통인부 투입기준(0.6인) 품의 70%를 보통인부에 적용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기준 제시

* 재료의 경우 할증포함 여부 제시

* 공구손료기준(공구 종류)제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 신청 신기술명(관리번호 호)

I. 신기술 분류

기존공법 보완	자재/재료/장비 개발(보완)	독립기술	기타

II. 신청 신기술 시공절차 및 고유영역

1) 시공절차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3) 표준품셈 관련항목(장, 절, 항)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4) 비교대상 기존기술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5) 신청 신기술 고유영역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Ⅲ. 신청 신기술 원가산정 적정성

1) 3-1의 시공절차 별 세부항목과 일치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2) 출처(품셈)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3) 현행 품셈과 비교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4) 적용단위 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5) 간접비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6) 일위대가와 일치 여부 - 항목, 수량, 단위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7) 적용단가, 신규자재, 노임단가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8) 수량산출 및 할증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9) 기존 기술과의 공사비 비교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10) 신기술 범위내에서 작성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기타의견

* 해당 항목별 종합검토의견 제시

--	--

년 월 일

검토기관 :

검 토 자 :

(인)

| PART 06 |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신청기술	명 칭	(관리번호 : ○○○○)
	범 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의견 (요약)		
답변		
주)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p>신기술의 평가규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에 의하여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장 귀 하</p>		
구비서류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 자료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

(기술검토포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신청기술 명칭 :

1.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검토

가. 신규성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의견>
나. 진보성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개량정도, 안전성,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의견>
다. 현장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의견>
라. 경제성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의견>
마. 보급성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의견>

2. 신청서의 검토

가. 유사기술조사 결과비교검토 자료의 적정성 〈의견〉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의 타당성 〈의견〉
다. 지방서의 적합성 〈의견〉
라. 유지관리지침서의 적합성 〈의견〉
마. 기타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기관 의견서

(기술검토포기관의 연장신청서 검토용)

○ 신청기술 명칭 :

1.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검토

<input type="checkbox"/>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연장신청 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input type="checkbox"/>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input type="checkbox"/>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input type="checkbox"/> 경제성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기존기술 대비 공기단축, 비용절감 효과 등의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input type="checkbox"/> 시장성 : 국내외 기술수요 및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 등 시장성이 우수한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input type="checkbox"/> 안전성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이 우수한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input type="checkbox"/> 환경성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환경부하량 절감 등에서 기술(공법)의 환경성이 우수한 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량 : 신기술 지정시 기술내용과 비교하여 기술개량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210mm × 297mm(백상지 80g/㎡)

2.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가. 시방서의 적합성 〈의견〉	
나. 유지관리지침서의 적합성 〈의견〉	
다. 기타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210mm × 297mm(백상지 80g/㎡)

2. 신청기술 적용결과

가. 예상 공사비 및 실제 소요된 공사비 비교 〈의견〉
나. 예상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기간 비교 〈의견〉
다. 시공상 문제점의 존재 여부 〈의견〉
라. 설계·시공상의 구조적 안정성 〈의견〉
마. 동종 유사 기술과의 비교 〈의견〉
바. 유지관리상의 편리성 〈의견〉
사. 하자보수 사례 〈의견〉

3. 신청기술의 시장성에 대한 검토

○ 현장 활용 가능성 〈의견〉
○ 기술 선호도 〈의견〉
○ 향후 시장 활용 전망 〈의견〉

4. 종합의견

--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별지 제4호의2호 서식]

공모형 신기술 수요조사서

1. 공모형 신기술 내용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이 필요한 주요 현안(ex.충간소음)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현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 손실액, 문제 반복 가능성 등 ▪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
기존기술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상용화 기술 동향 및 한계점 등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개발 방향, 문제해결 개선방향 등
기타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대상에 대한 정량적 성능·기능·스펙 등 기술적 완성도 판단 기준 ▪ 자유롭게 작성

2. 적용 가능 예상 사업(대표사업 3개 이내)

연번	사업명	진행단계	적용 예상시기
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5년초
2		기본계획	
3			

* 제출 시 모든 설명문(파란색 글씨)은 삭제하고 제출

[별지 제4호의3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 검토용)

○ 개요

공모기술	
신청기술명	
개발자	

○ 검토의견

기술수요 부합성	검토결과	부합 <input type="checkbox"/> 미부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기술성 검토	품질 및 성능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현장적합성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경제성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 종합의견

공모형 신기술 적합성	검토결과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보완사항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접수번호	
------	--

년 월 일

신청인											
신청기술명											
기술요지											
조사범위	국제분류 (IPC)										
	특허문헌	한국	(O)	미국	(O)	일본	(O)	EP	(O)	PCT	(O)
	비특허문헌	신기술									
논문등											

조사결과 총괄표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전 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기술내용[()쪽 ()행] 및 도면
1		
2		
3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후 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명 칭
1		
2		
3		

■ 신기술, 논문 등의 비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명 칭
1		
2		

210mm × 297mm(백상지 80g/㎡)

기술 대비표(상세분석)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전 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후 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 신기술, 논문 등 비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210mm×297mm(백상지 80g/㎡)

지식재산권 관련 추가 검토사항

■ 신청기술 관련 신청인의 특허 및 비특허 문헌 현황

연번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비특허 문헌(신기술, 논문 등)
1		
2		

■ 신청인 및 신청기술 관련 특허 분쟁 현황

구분	분쟁대상 특허	현황 및 결과
1. 신청인 관련		
2. 유사기술 관련		

조사기관 검토 의견

■ 조사기관 검토 의견

항목	검토 의견
1. 신청기술과 제시특허 연관성	
2. 권리분쟁 건과 신청 기술의 관련성	
3. 기타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1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기술분야 평가 (신청기술이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

2.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 (신청기술이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

3.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4. 심사기준 검토

심사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신규성 (50)	기존기술과 차별성	25	
	독창성과 자립성	25	
평가점수		50	<input type="checkbox"/> 인정(35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진보성 (50)	품질 향상	15	
	개량 정도	15	
	안전성	10	
	첨단기술성	10	
평가점수		50	<input type="checkbox"/> 인정(35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 스마트 건설기술,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및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의2호 서식]

1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구분	위원회 심사 결과	
1차 심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2. 위원회 종합의견

1) 신규성

※ 신청기술의 신규성 인정/불인정 사유 등을 작성

2) 진보성

※ 신청기술의 진보성 인정/불인정 사유 등을 작성

본 위원회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위원회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사 의견서(지정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현장실사 의견서(연장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현장적용 내용이 신기술의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2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 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현장 우수성 (70)	시공성	20	
	안전성	10	
	구조안정성	15	
	유지관리 편리성	15	
	환경성	10	
경제성 (15)	설계·시공비 절감	5	
	유지관리비 절감	5	
	공사기간 단축	5	
보급성 (15)	시장성	10	
	공익성	5	
계		100	<input type="checkbox"/> 2차 인정(7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의2호 서식]

2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구분	위원회 심사 결과	
2차 심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2. 위원회 종합의견

※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 인정/불인정 사유 등을 작성

본 위원회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위원회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민원)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활용실적 (3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수준	15	
기술의 우수성 (70)	품질검증	15	
	경제성	10	
	시장성	5	
	안전성	10	
	환경성	5	
	기술개량	5	
	권고사항 이행여부	5	
	사후평가결과	5	
가점 (10)	해외활용실적	1	
	기술보급노력	1	
	기술가치평가	2	
	스마트건설 기술 여부	1	
	계	100	<input type="checkbox"/> 보호기간연장 인정(4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210mm × 297mm(백상지 80g/㎡)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의2호 서식]

심사의견서

1. 신기술 지정 내용

지정번호	제 호	보호기간	
명칭			
기술 범위			

2. 심사 의견

범위조정 또는 지정취소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기술 범위 조정(기술 범위 조정 심사에 한함)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범위 기술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의3호 서식]

2차심사 종합의견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구분	위원회 심사 결과	
	2차 심사 결과 (연장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정
연장기간	년	

2. 위원회 종합의견

1) 활용실적 및 가점

※ 별표1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현황, 위원회 의견을 기재
(활용 건수 및 금액과 별표1에 따른 활용실적 배점구간, 가점항목의 건수와 별표1에 따른 가점 항목별 배점을 명시)

2) 기술의 우수성

※ 신청기술의 기술우수성에 대한 위원회 의견 등을 작성

본 위원회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위원회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서약서(신청인)

□ 신청기술명 :

□ 심사일시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 연장신청 포함)을 신청함에 있어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진흥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신청서 반려, 지정취소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일자 :

신청인 : (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서약서(이해관계인)

□ 신청기술명 :

□ 심사일시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 연장신청 포함)에 대해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진흥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어떠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기술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등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도 승복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신기술심사위원회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일자 :

이해관계인 : (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청렴서약서(심사위원)

□ 신청기술명 :

□ 심사일시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신청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기술 심사에 임하고, 심사 중 인지한 사실과 신청 기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 등도 철저히 거부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사실과 다르거나 서약내용을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 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이해관계 기준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 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과 관련된 시험을 실시했던 기관에 근무 중인 자
4. 신청기술을 연구용역 했던 기관에 근무 중인 자
5. 기타 진흥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서약일자 :

심사위원 :

(서명)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스마트 건설기술)

- 명칭:
- 개발자(개발자):
- 보호 기간: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발자):
- 보호 기간: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PART 06 |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신청사유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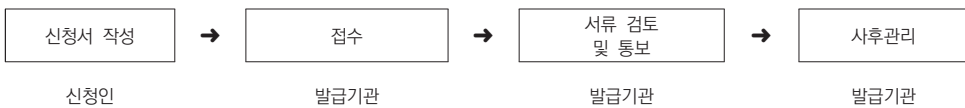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PART 06 |

신기술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1호 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나. 전화번호 :

2. 명칭 :

3. 내용요약

〈분야〉

〈기술내용〉

〈기술범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350, 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지식(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 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 나. 전화번호 :

2. 지정번호 :

3. 명칭 :

4. 내용요약

<분야>

<기술내용>

<기술범위>

5. 보호기간 :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350, 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지식(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3호 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기 관	직 위	기술개발참여내역	연락전화번호 (휴대폰)

※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독 또는 5개 법인이하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5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신청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인감 날인) 제출
- 신청인이 6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5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내에서 참석 가능. 다만,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직위란 직무 및 직책상의 지위를 말함(예 : 과장, 부장, 사장 등)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4호 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신청인 :

심사 일시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기 관	직 위	이해관계 내역	연락전화번호 (휴대폰)

※ 작성시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이 단독 또는 3개 법인이하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3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이해관계 의견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이해관계인이 4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3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5호 서식]

원 가 계 산 서

〈측면〉

원
가
계
산
서

크기
16

2
0
0
0
·
0
(크기10)

〈전면〉

원 가 계 산 서

(크기30)

(명칭:○○○○○○)
(크기1(8))

(신청인:○○○○○○)

(우측여백3cm, 크기1(3))

20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조사기관 : ○○○)

(크기20, 하부여백 5cm)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8호 서식]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예시)

□ 지식(산업)재산권 목록

1.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 2.
- 3.

본인은 위 지식(산업)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가 위 지식(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건설신기술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신기술 지정에 따른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지식(산업)재산권 공동권리자

○○○건설(주)

대표이사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첨 부) 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증명서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9호 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단위 : 백만원)

지정 번호	개발자	신기술 활용금액	일반공법 적용금액	절감액	공사내용

※ 기재요령

1. 신기술지정(기술별)별로 절감액을 기재한다.
2. 신기술 활용금액은 협회에 신고한 **기술별 총 활용금액**으로 기재한다.
3. **일반공법 적용금액**은 지정받은 신기술과 대비되는 일반공법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산출된 공사 금액을 기재한다.
4. **절감액**은 일반공법 적용금액 대비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절감액을 기재한다.
5. **내용**에는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일반공법 산출 근거자료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10호 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 상 호 :
- 신기술지정번호 :

구 분	내 용
분 석 (부진사유 등)	
대 책	

※ 기록내용이 많으면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11호 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No.000

New Excellent Technology(NET) Certificate

Title :

Developer :

Period of Protection : Oct 00, 2000~Oct 00, 2000(O years)

Description of Technology

『

Scope Of Technology

『

Contents to be Protected

- The developer is authorized to receive royalties from others for using NET
- It is recommended to use NET prior to the similar imported technology
- The ordering authority may encourage to test the equipment or to construct experimentally in regard of NET
- When the test and the experimental construction for NET result in an excellent performance, the ordering authority may apply NET preferentially

In compli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14 of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 hereby designate above technology as a NET.

October 00, 2000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12호 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 신청인 :

□ 신청기술명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시 제출된 활용실적 관련 사항(건수, 적용범위, 적용내용, 사실 증명 등)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며, 향후 활용실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취소, 신청서 반려 등의 행정적 제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일자 :

신청인 :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13호 서식]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① 신청기술명칭	※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② 신청기술 지정분야	※ 예 : 토목 - 도로 - 도로구조 설계(매뉴얼 5페이지 참조)						
③ 핵심어	※ 신청기술과 관련된 핵심어를 5가지 이내로 기재						
④ 신청기술의 범위	※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⑤ 신청기술의 내용(요약)	※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⑥ 신청인 정보							
신청인 ①	기관명칭	※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명 기재					
	기관유형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중 선택					
	법인번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기관주소	※ 법인등기부 등본 내 주소 기재(단 도로명 주소로 변환 기재)					
	우편번호	※ 우편번호 5자리 기재					
신청인 ②	기관명칭						
	기관유형						
	법인번호						
	기관주소						
	우편번호						
신청인 ③	기관명칭						
	기관유형						
	법인번호						
	기관주소						
	우편번호						
⑦ 실무담당자 정보							
구분	이름	소속기관명	회사 연락처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직위
실무담당자 1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2							
실무담당자 3							

※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 각 신청기관별 실무담당자 1명씩 기재(칸 추가 가능)

※ 기술인증센터 담당자와 연락할 **총괄책임자를 정하여 기재**

※ 한글(HWP)로 작성하고, 접수시 모든 파일은 신기술 인증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 각 실무담당자는 접수전날까지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요망

건설신기술 매뉴얼 [제14호 서식]

신기술 기술범위 조정 신청서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지정 신기술 <input type="checkbox"/> 연장 지정 신기술		
신기술 번호 및 명칭	(제000호) ○○○○○○○○○○		
신기술 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조기술범위 조정 요청 사유			
기존 기술범위			
조정 기술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기술 기술범위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PART
07

유사신기술 분류표



건설신기술 매뉴얼

PART
07

유사신기술 분류표

07

유사신기술
분류표

(업데이트일 : 2024.06.07.)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A 도목	01. 도로	01. 도로 구조 설계	01. 도로 지반고 추출	157(도로지반고추출)	1		0	1
			02. 도로 시거 산정	228(도로시거산정)	1		0	1
		02.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1. 콘크리트 포장	67(콘크리트포장), 106(콘크리트포장), 139(콘크리트포장), 262(콘크리트무늬포장), 607(콘크리트포장)	5	743(콘크리트포장)	1	6
			02. 도로용 개량 콘크리트 재료	190(도로용 개량콘크리트 재료)	1		0	1
			03. 반강성 포장	499(반강성 포장)	1		0	1
			04. 콘크리트 포장 보수	37(콘크리트 포장보수), 615(콘크리트 포장보수), 637(콘크리트 포장보수), 665(콘크리트 포장보수)	4	981(콘크리트 포장보수)	1	5
		03.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01. 아스팔트 보강재료	9(아스팔트 보강재료), 12(아스팔트 보강재료)	2		0	2
			02. 아스팔트 순환 골재	117(아스팔트 순환골재), 192(아스팔트 순환골재), 205(아스팔트 순환골재)	3		0	3
			03. 아스팔트 배합 설계	236(아스팔트 배합설계)	1	900(아스팔트 배합설계)	1	2
			04. 아스팔트 포장	21(아스팔트 포장(아스콘)), 42(아스팔트 포장(표층)), 220(아스팔트 포장(보수재료)), 263(아스팔트 포장(반강성)), 391(아스팔트 포장(표층)), 788(아스팔트 포장)	6	943(아스팔트 포장), 947(아스팔트 포장)	2	8
			05.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	321(아스팔트 포장보수), 468(아스팔트 포장보수), 501(아스팔트 포장보강), 547(아스팔트포장보수)	4	799(아스팔트포장보수), 918(아스팔트포장보수)	2	6
			06. 개질 아스팔트	48(개질아스팔트), 196(개질아스팔트), 206(개질아스팔트), 277(개질아스팔트)	4	680(개질아스팔트)	1	5
			07. 보도용 표층 포장	41(보도용표층포장)	1		0	1
			08. 스팀분사다짐	502(스팀분사다짐)	1		0	1
			09. 맨홀 보수		0	785(일상유지보수), 951(맨홀보수)	2	2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4. 도로기층	01. 도로기층포장		17(도로기층포장), 328(도로기층포장), 777(도로기층포장)	3		0	3	
			02. 도로노반처리	168(도로노반처리)	1		0	1	
	03. 기타 포장 재료		203(흙포장재료)	1		0	1		
	05. 교면포장	01. 교면배수		125(교량배수)	1		0	1	
			02. 교면방수	364(교면방수)	1		0	1	
		03. 교면포장		320(교면포장), 322(교면포장), 495(교면포장), 741(교면포장)	4	691(교면포장), 803(교면포장), 820(교면포장), 827(콘크리트포장), 874(교면포장)	5	9	
			04. 교면포장보수	427(교면포장보수), 562(교면포장보수)	2	931(교면포장보수)	1	3	
	06. 도로 안전시설	01. 차량충격흡수시설		316(차량충격흡수시설), 423(차량충격흡수시설), 496(차량충격흡수시설), 571(차량충격흡수시설)	4		0	4	
			02. 중앙분리대	96(중앙분리대)	1		0	1	
			03. 가이드레일	101(가이드레일), 380(차량방호울타리), 388(차량방호울타리)	3		0	3	
			04. 가설용안전보호벽	118(가설용안전보호벽)	1		0	1	
			05. 낙석방지책		184(낙석방지책), 207(낙석방지책), 361(낙석방지책), 487(낙석방지책), 749(낙석방지책)	5		0	5
				06. 낙석방지망	421(낙석방지망)	1		0	1
			07. 재귀반사체	58(재귀반사체)	1		0	1	
			08. 차선규제봉	61(차선규제봉)	1		0	1	
			09. 도로표지병		105(도로표지병), 162(도로표지병), 372(도로표지병)	3		0	3
				10. 노면표지	231(노면표지), 458(노면표지), 554(노면표지), 570(노면표지), 666(차선도색)	5		0	5
			11. 광섬유 안전표지장치	189(광섬유 안전표지장치)	1		0	1	
			12. 미끄럼방지 포장		78(미끄럼방지), 122(미끄럼방지), 344(미끄럼방지), 346(미끄럼방지), 557(미끄럼방지)	5		0	5
				13. 기타 도로안전시설		0	790(기타 도로안전시설)	1	1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7. 방음벽	01. 방음벽	188(방음벽), 199(방음벽), 355(방음벽), 414(방음벽)	4	795(방음벽), 876(방음벽)	2	6	
			02. 방음벽 기초	407(방음벽기초)	1		0	1	
		08. 도로 경계석	01. 도로 경계석	25(도로경계석), 482(도로경계석), 620(도로경계석)	3		0	3	
		09. 맨홀	01. 맨홀보수	15(맨홀보수), 135(맨홀보수), 244(맨홀보수), 265(맨홀보수), 276(맨홀보수), 293(맨홀보수), 428(맨홀보수), 429(맨홀보수), 622(맨홀보수)	9		0	9	
			02. 맨홀거꾸집	68(맨홀거꾸집)	1		0	1	
		10. 기타 도로 시설	01. 가로등 기초	455(가로등기초)	1		0	1	
			02. 기타 도로 시설		0	911(기타 도로 시설)	1	1	
		02. 철도	01. 철도궤도 설계	01. 철도 중단선형설계	52(도로및철도중단선형설계)	1		0	1
				02. 철도궤도 설계	224(철도궤도설계)	1		0	1
			02. 궤도	01. 철도 궤도	543(철도궤도), 721(철도궤도)	2		0	2
02. 철도 침목	248(철도침목)			1		0	1		
03. 분기기 및 신축이음	225(분기기 및 신축이음)			1		0	1		
04. 콘크리트 궤도 포장	573(콘크리트궤도포장)			1		0	1		
05. 전동차 패널 설치	588(전동차 패널설치)			1		0	1		
06. 레일 직결 체결장치	589(레일 직결체결장치)			1		0	1		
03. 철도 시스템 운영				0		0	0		
04. 신호 및 제어				0		0	0		
05. 철도 유지 ·보수 ·보강			0	940(철도교내하력평가기술), 972, 973	3	3			
06. 철도 차량			0		0	0			
07. 기타 철도시설		719(도상용 신축이음장치)	1		0	1			
03. 항만 및 해안	01. 준설 및 매립			0		0	0		
	02. 항만 및 해안 구조물	01. 콘크리트 케이슨	444(콘크리트 케이슨), 616(케이슨 기초그라우팅), 639(해양콘크리트)	3	825(콘크리트 케이슨), 905(콘크리트 케이슨)	2	5		
	03. 수중 구조물		654(해수취수시설)	1		0	1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4. 상 하수 도	04. 항만 부속 시설	01. 호안조성	01. 호안조성	241(호안조성), 475(호안조성), 699(방충재 고정장치)	3	854(항만 부속 시설)	1	4	
		05.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01. 강구조물 방식	01. 강구조물 방식	144(강구조물 방식)	1		0	1
			02. 해상구조물 방식	02. 해상구조물 방식	212(해상 구조물방식), 601(해상 구조물방식)	2		0	2
		06. 방파제	01. 방파제 제작	01. 방파제 제작	566(방파제 제작)	1		0	1
		07. 기타 항만 및 해안 시설	01. 대형평바지연결	01. 대형 평바지 연결	64(대형 평바지 연결)	1		0	1
		01. 관로 설계 및 프로그램	01. PCC관 설계	01. PCC관 설계	170(PCC관설계)	1		0	1
		02.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1. 수도관 체결기구	01. 수도관 체결기구	315(수도관 체결기구)	1		0	1
	02. 강관배관		02. 강관배관	267(강관배관), 378(강관배관), 438(강관배관), 610(강관배관)	4	815(강관배관)	1	5	
	03. 상수관보수		03. 상수관보수	76(상수관보수), 88(상수관보수), 354(상수관보수), 385(상수관보수), 497(상수관보수), 565(상수관보수), 669(상수관보수)	7	864(상수관보수), 936(상수관보수)	2	9	
	04. 상수관세관		04. 상수관세관	526(상수관세관)	1	731(상수관세관)	1	2	
	05. 상수관 내부검사		05. 상수관 내부검사	584(상수관내부검사)	1		0	1	
	01. 하수관 본관 배관	01. 하수관 본관 배관	01. 하수관 본관 배관	27(하수관 본관배관), 214(하수관 본관배관), 219(하수관 본관배관), 412(하수관 본관배관), 484(하수관 본관배관)	5	796(하수관 본관배관)	1	6	
		02. 하수관 가지관 접합	02. 하수관 가지관 접합	242(하수관가지관접합)	1		0	1	
		03. 하수관 지장물 제거	03. 하수관 지장물 제거	275(하수관지장물제거)	1		0	1	
	03.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4. 하수관 보수	04. 하수관 보수	34(하수관보수), 53(하수관보수), 63(하수관보수), 70(하수관보수), 148(하수관보수), 285(하수관보수), 319(하수관보수), 389(하수관보수), 401(하수관보수), 409(하수관보수), 456(하수관보수), 492(하수관보수), 581(하수관보수), 624(하수관보수), 636(하수관보수), 675(하수관보수), 709(하수관보수), 711(하수관보수)	18	687(하수관보수), 714(하수관보수), 783(하수관보수), 794(하수관보수), 851(하수관보수), 855(하수관보수), 877(하수관보수), 910(하수관보수), 913(하수도 유지보수), 948(하수관보수), 949(하수관보수), 968(하수관보수)	12	30	
		05. 오수차집 시설	05. 오수차집 시설	47(오수차집시설), 443(오수차집시설)	2		0	2	
	06. 강관배관	06. 강관배관		0	837(강관배관)	1	1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4. 상수 처리		01. 정수시설	35(정수시설), 83(정수시설), 180(정수시설), 306(정수시설), 384(정수시설), 397(정수시설), 605(정수시설)	7		0	7
			02. 활성탄 재생	109(활성탄재생)	1		0	1
			03. FRP원형 밸브실	215(FRP원형밸브실)	1		0	1
	05. 하수 처리		01. 하수처리	13(하수처리), 24(하수처리), 46(하수처리), 72(하수처리), 73(하수처리), 95(하수처리), 99(하수처리), 103(하수처리), 108(하수처리), 111(하수처리), 113(하수처리), 114(하수처리), 145(하수처리), 147(하수처리), 153(하수처리), 159(하수처리), 164(하수처리), 165(하수처리), 171(하수처리), 181(하수처리), 194(하수처리), 195(하수처리), 197(하수처리), 210(하수처리), 230(하수처리), 237(하수처리), 251(하수처리), 255(하수처리), 256(하수처리), 272(하수처리), 278(하수처리), 289(하수처리), 303(하수처리), 339(하수처리), 342(하수처리), 377(하수처리), 379(하수처리), 382(하수처리), 494(하수처리)	39		0	39
			02. 하수슬러지처리	6(하수슬러지처리), 62(하수슬러지처리), 65(하수슬러지처리), 137(하수슬러지처리), 383(하수슬러지처리)	5		0	5
			03. 발효조 막힘방지	97(발효조 막힘방지)	1		0	1
			04. 하수 분뇨 악취제거	160(하수분뇨 악취 제거)	1		0	1
			05. 하수 집수장치	175(하부집수장치)	1		0	1
			06. 하수 오폐수 수집	555(하수오폐수 수집)	1		0	1
			06. 상·하수도 오니준설	01. 하수준설	4(하수준설), 71(하수준설), 142(하수준설), 314(하수준설), 340(하수준설)	5		0
	02. 우수지준설	10(우수지준설), 11(우수지준설), 44(우수지준설), 308(우수지준설)		4		0	4	
	07. 기타 상하수도 시설	01. 상수도구조물방수 시설	466(상수도구조물 방수)	1	826(기타 상하수도 시설), 838(기타 상하수도 시설), 862(기타 상하수도 시설)	3	4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5. 수자원	01.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01.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0	786(빗물저류조), 894(빗물이용시설)	2	2
		02. 호안조성	01. 호안조성	33(호안조성), 56(호안조성), 130(호안조성), 167(호안조성), 182(호안조성), 185(호안조성), 216(호안조성), 325(호안조성)	8	907(호안조성 및 하상보호)	1	9
		03. 댐			0	957(수중구조물외관조사기술)	1	1
		04. 보	01. 가동보설치	92(가동보설치), 564(가동보 설치), 651(가동보 설치), 668(고무보)	4	738(고무보)	1	5
		05. 하천 수질 정화 시설	01. 하천수질정화	45(하천수질정화), 223(하천수질정화), 469(하천수질정화)	3		0	3
		06. 지하수 및 관리	01. 지하수 관리	286(지하수 관리)	1	772(지열개발이용), 912(지하수 관리)	2	3
		07. 기타	01. 하상 저니 시료채취	100(하상저니 시료 채취)	1		0	1
		02. 부두 차막이 시설	119(부두차막이시설)	1		0	1	
		03. 폰툰 위치고정	172(폰툰위치고정)	1		0	1	
		04. 기타	758(IFS공법), 761(수문제작 및 설치공법)	2		0	2	
	06. 교량	01. 교량 설계 및 구조	01. PSC인장	66(PSC인장)	1	696(라멘교 공법)	1	2
			02. 교량설계	271(교량설계), 672(파형강판)	2	688(교량공법), 762(교량공법), 774(반일체식교량), 819(PSC합성형라멘구조공법)	4	6
			03. 보도교진동저감	442(보도교 진동저감)	1	938(보도교 진동저감)	1	2
			04. 교량상부구조물인양	538(교량 상부구조물 인양)	1		0	1
			05. 사장교안정	613(사장교안정)	1		0	1
			06. 벽체와 기초 연결		0	834(벽체와 기초 연결)	1	1
		02. 교량 상부 구조물	01. 교량상판	81(교량상판), 90(교량상판), 309(교량상판)	3	823(PSC슬래브거더연속구조)	1	4
			02. 바닥판	374(교량바닥판), 405(교량바닥), 464(교량바닥판), 553(교량바닥판)	4	751(Rib-Deck 공법), 850(바닥판), 852(바닥판), 904(바닥판)	4	8
			03. 교량상판접착	186(교량상판접착)	1		0	1
		03. 교량받침	01. 교량받침	136(교량받침), 229(교량받침), 260(교량받침),	7	873(교량하부구조설계)	1	8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283(교량받침), 398(교량받침), 437(교량받침), 545(교량받침)				
		04. 교량거더	01. 박스거더	143(박스거더), 366(박스거더교), 561(박스거더교),	3	763(박스거더), 781(박스거더), 899(박스거더), 923(박스거더)	4	7
			02. 합성거더	77(합성거더(토목)), 297(합성거더(토목)), 371(합성거더), 488(합성거더), 542(합성거더), 574(합성거더), 646(합성거더)	7	895(합성거더), 919(합성거더), 926(합성거더)	3	10
			03. PSC거더	221(PSC거더(토목)), 247(PSC거더), 270(PSC거더), 399(PSC거더(철도)), 524(PSC거더), 582(PSC거더(토목)), 603(PSC거더(토목)), 648(PSC거더(토목)), 752(PSC형거더(토목))	9	690(PSC거더(토목)), 784(PSC거더(토목)), 812(PSC거더), 824(PSC거더), 861(PSC거더), 884(UPC거더)	6	15
			04. 교량연속화	453(교량연속화), 517(교량연속화), 595(다경간일체화)	3		0	3
			05. 기타		0	846(자전거보도교), 980(기타)	2	2
		05. 가설 시설물	01. 가설교량	31(가설교량), 304(가설교량), 531(가설교량), 551(가설교량), 671(가물막이), 585(가설교량)	6	679(가설교량)	1	7
			02. 가설발판	408(교량가설발판)	1		0	1
			03. 거무집		0	776(거무집)	1	1
		06. 교량 부속 시설물	01. 교량신축이음	2(교량신축이음), 552(교량 신축이음장치), 627(교량신축이음장치)	3	841(신축이음공법)	1	4
			02. 철근커플러이음	519(교각주근커플러이음)	1		0	1
			03. 방호울타리	294(교량옹방호울타리)	1		0	1
		07. 교량 유지·보수	01. 보강	23(교량보강), 55(교량보강), 104(교량보강), 132(교량보강), 343(교량보강(토목)), 400(교량보강(교량)), 445(교량보강)	7	697(도정제거공법), 787(수중구조물 표면상태영상 취득), 847(안전진단계측기술), 871(안전진단계측기술), 880(안전진단계측기술), 883(안전진단계측기술), 892(보수보강), 902(안전점검지원기술),	16	23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924(순상분석기술), 933(강구조물안전진단계측기술), 959(연직변위측정기술), 960(안전진단계측기술), 967(안전진단계측기술), 986(교량보강), 990(보강), 991(안전진단계측기술)		
		08. 기타 교량시설		698(교량설계)	1	836(잔교), 977	2	3
07. 터널	01. 터널 구조 및 설계	01. 변위측정		348(터널 내공변위 측정)	1		0	1
		02. 이격거리산정		498(터널 발파이격거리산정)	1		0	1
	02. 터널 구조물 설치	01. 터널시공		82(터널시공), 238(터널시공), 299(터널시공), 335(터널시공), 594(터널시공), 745(터널시공)	6	729(터널시공), 821(터널시공), 859(터널시공), 878(터널시공), 896(터널시공), 927(터널시공), 965(터널시공)	7	13
		02. 세그먼트 연결		87(터널용 세그먼트연결)	1		0	1
	03. 터널 보강 안정	01. 록볼트		60(록볼트), 69(록볼트), 300(록볼트), 523(록볼트)	4	683(록볼트)	1	5
		02. 그라우팅		259(터널라이닝배면그라우팅), 441(터널숏크리트), 767(숏크리트공법)	3	685(숏크리트공법), 814(그라우팅)	2	5
		03. 기타			0	890(강지보재)	1	1
	04. 터널 굴착 (발파)	01. 터널발파		14(터널발파), 232(터널발파), 341(터널발파), 459(터널발파), 518(터널발파), 521(터널발파), 678(터널굴착)	7	989(터널발파)	1	8
	05. 터널방수	01. 시트방수		369(터널시트방수)	1	987(시트방수)	1	2
	06. 터널 유지보수				0	887(터널 유지보수 진단), 898(터널 유지보수 진단), 935(터널 유지보수)	3	3
	07. 터널 환기시설	01. 발파먼지저감 02. 내화풍도슬래브		602(발파먼지저감)	1	849(발파먼지저감), 856(내화풍도슬래브)	2	3
	08. 기타 터널시설				0	804(수직구 시공), 813(터널 배수공법), 828(안전기반 공사관리), 903(강지보재), 983(강지보재)	5	5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8. 토질 및 기초	01.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01. 재하시험	3(재하시험), 266(재하시험), 656(말뚝재하시험)	3		0	3
			02. 지반환경조사	440(지반환경조사), 635(지반환경조사), 720(지반환경조사)	3	844(지반환경조사)	1	4
			03. 지반계측	150(계측), 539(연약지반침하측정), 575(계측), 643(지반침하자동계측)	4		0	4
			04. 시료채취	173(불교란시료채취), 254(불교란시료채취)	2		0	2
	02. 지반 개량 및 보강		01. 표층처리	16(연약지반 표층처리), 127(연약지반 표층처리), 368(연약지반 표층처리), 390(연약지반 표층처리)	4		0	4
			02. 지반개량	38(연약지반개량), 213(연약지반개량), 227(연약지반개량), 269(연약지반개량), 415(연약지반개량), 532(연약지반개량), 568(연약지반개량), 592(연약지반개량), 600(뽕이말뚝), 644(지반 차수 보강 개량), 705(연약지반 개량), 747(지반개량)	12	845(지반개량), 979(지반개량)	2	14
			03. 기둥체조성	357(지반개량기둥체조성)	1		0	1
			04. 해저지반보강	290(해저 연약지반 보강), 420(해저 연약지반 보강)	2		0	2
			05. 그라우팅	650(그라우팅 지반 보강), 652(그라우팅 앵커), 662(그라우팅 지반 보강)	3	718(그라우팅), 858(그라우팅)	2	5
	03. 지반 굴착		01. 암반파쇄	20(암반파쇄), 50(암반파쇄), 226(암반파쇄), 336(암반파쇄)	4		0	4
			02. 자유면발파	124(자유면 발파), 312(단일 자유면 발파)	2		0	2
	04. 말뚝(Pile)		01. 기성말뚝시공	22(기성말뚝시공), 446(기설말뚝시공)	2	891(기성말뚝시공), 934(복합말뚝)	2	4
			02. 현장타설말뚝	510(현장 타설말뚝), 512(현장 타설말뚝), 556(현장 타설말뚝)	3		0	3
			03. 해상말뚝	112(해상말뚝), 152(해상 말뚝 위치제어)	2		0	2
			04. 말뚝 연결	425(콘크리트 말뚝연결), 702(천공공법), 712(콘크리트 연결), 748(말뚝지지력기술), 769(SIP공법)	5		0	5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5. 말뚝절단	156(강관 말뚝절단), 279(강관 말뚝절단)	2	703(강관말뚝머리공법)	1	3
			06. 말뚝두부보강	134(강관 말뚝두부보강), 307(강관 말뚝두부보강), 373(강관 말뚝두부보강), 387(강관 말뚝두부보강), 597(강관 말뚝두부보강)	5	730(강관 말뚝머리보강), 768(강관 말뚝머리보강공법), 817(강관말뚝 두부보강)	3	8
		05. 토목 지중 구조물	01. 복개아치구조물	40(복개아치구조물)	1		0	1
			02. PC암거제작설치	151(PC암거 제작설치), 202(PC암거 제작설치), 606(PC구조물 커플러이음)	3	953(조립식PC 공동구)	1	4
			03. 비개착구조물	426(비개착 지하구조물축조), 567(비개착 지하구조물축조), 572(비개착 지하구조물축조)	3	716(비개착구조물), 810(비개착구조물)	2	5
			04. 배수로	356(배수로), 395(배수로)	2		0	2
		06. 흙물막이공	01. 흙막이가시설	131(흙막이가시설), 249(흙막이가시설), 433(흙막이가시설), 448(흙막이가시설), 480(흙막이가시설), 491(흙막이가시설), 533(흙막이가시설), 612(흙막이가시설), 614(흙막이가시설), 640(흙막이가시설), 645(흙막이가시설), 724(흙막이가시설), 765(흙막이가시설)	13	726(흙막이가시설), 830(흙막이가시설), 875(흙막이가시설), 915(흙막이가시설), 954(흙막이가시설), 955(흙막이가시설)	6	19
			02. 침출수차단	19(매립지차수), 93(매립지차수), 200(매립지차수), 402(구조물맞입반차수)	4		0	4
			03. 가물막이	183(가물막이), 291(가물막이), 483(가물막이), 559(차수그라우팅)	4		0	4
		07. 사면 관리 및 보강	01. 사면보강	250(사면보강), 287(사면보강), 449(사면보강), 733(사면보강), 737(사면보강)	5	689(확공지압형 앵커), 842(사면보강), 962(사면보강)	3	8
			02. 쓰일네일링	257(쓰일네일링), 370(쓰일네일링), 474(쓰일네일링), 479(쓰일네일링), 529(쓰일네일링), 530(쓰일네일링), 540(쓰일네일링), 598(쓰일네일링), 673(쓰일네일링)	9		0	9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8. 옹벽 (보강토 옹벽 포함)	03. 성토다짐		352(성토다짐)	1		0	1		
			04. 기타 사면 관리 및 보강			0	857(사면 관리 및 보강), 922(사면 관리 및 보강), 978(사면 관리 및 보강)	3	3		
			01. 보강토옹벽		8(보강토옹벽), 187(보강토옹벽), 324(보강토옹벽), 504(보강토옹벽), 657(보강토옹벽), 739(보강토옹벽)	6	775(보강토옹벽)	1	7		
			02. 프리캐스트옹벽		431(프리캐스트옹벽), 490(프리캐스트옹벽), 513(프리캐스트옹벽)	3	700(프리캐스트옹벽), 888(프리캐스트옹벽)	2	5		
			03. 파형강판구조체옹벽		549(파형강판구조체옹벽)	1		0	1		
			09. 기타 토질 및 기초 시설	01. 폐기물매립지	327(폐기물매립지안정화)	1		0	1		
			09. 조경	01. 사면녹화	01. 비탈면녹화	1(비탈면녹화), 28(비탈면녹화), 32(비탈면녹화), 49(비탈면녹화), 193(비탈면녹화), 201(비탈면녹화), 332(비탈면녹화), 333(비탈면녹화), 411(비탈면녹화), 434(비탈면녹화), 461(비탈면녹화), 503(비탈면녹화), 674(비탈면녹화)	13	693(비탈면녹화)	1	14	
						02. 식생조성	310(식생조성), 360(식생조성)	2		0	2
						03. 수목지지	243(수목지지)	1		0	1
						04. 기타 조경시설	01. 잔디시공	74(잔디시공), 757(잔디자동관리)	2	701(보강토옹벽), 848(잔디시공)	2
10. 측량	01 수치지도	01. 수치지도제작	155(수치지도 제작), 447(수치지도 제작)	2		0	2				
		02. 하천측량	01. 준설관리	252(준설관리시스템)	1		0	1			
		03. 기타 측량		0		0	0				
11. 토목 구조물 보수 보강 (포장 보수 제외)	01.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01. 보수	209(콘크리트구조물 보수), 331(콘크리트구조물 보수), 359(콘크리트구조물 보수), 363(콘크리트구조물 보수), 419(콘크리트구조물 보수), 430(콘크리트구조물 보수), 462(콘크리트구조물 보수), 477(콘크리트구조물 보수),	16	885(콘크리트구조물 표면보호보수), 974(콘크리트구조물 보수), 984(보수)	3	19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대분야	중분야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506(콘크리트농수로 보수), 507(콘크리트구조물 보수), 522(콘크리트구조물 보수), 563(콘크리트구조물 보수), 576(콘크리트구조물 보수), 577(콘크리트구조물 보수), 619(콘크리트구조물 보수), 642(콘크리트구조물 표면보호보수)				
			02. 보강	295(콘크리트구조물 보강), 317(콘크리트구조물 보강), 351(콘크리트구조물 보강), 381(콘크리트구조물 보강), 403(콘크리트구조물 보강), 404(콘크리트구조물 보강), 406(콘크리트구조물 보강), 417(콘크리트구조물 보강), 535(수중구조물 보강)	9		0	9
			03. 보수보강	59(수중노출콘크리트구조물 방식보수보강), 110(토목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140(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211(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222(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233(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246(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288(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511(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596(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647(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694(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12	692(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840(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2	14
			04. 표면보호	191(콘크리트 표면광택발현), 274(콘크리트 표면처리), 345(콘크리트구조물 표면보호), 365(콘크리트구조물 표면보호), 432(콘크리트구조물 표면보호), 550(콘크리트구조물표면보호)	6		0	6
			05. 누수방지	178(누수보수)	1		0	1
	02. 방식	01. 수리구조물방식		86(해상구조물방식), 330(수리시설 콘크리트구조물 방식보수), 544(오수하수시설구조물방식)	3	707(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1	4
	03.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0	715(강구조물 보수도장), 906(강구조물 도장보수), 939(제방의 보수보강)	3	3
B 건축	01. 건축 계획 및 관리	01. 설계 및 프로그램	01. 건축소프트웨어	79(건축설계소프트웨어)	1		0	1
			02. 거푸집연직도관리	625(거푸집연직도 관리)	1		0	1
		02. 기타			0	809(대피공간)	1	1

대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중분야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2. 가설 시설 물		건축계획						
		01. 안전 가시설	01. 안전가시설	626(안전가시설)	1		0	1
03. 조경		02. 기타 가설물			0		0	0
		01. 옥상녹화	01. 옥상녹화	305(옥상잔디녹화), 580(옥상녹화 기반조성)	2	710(인공지반녹화), 839(옥상녹화)	2	4
04. 기초		02. 기타 조경			0		0	0
		01. 기초다짐 및 지정	01. 블럭기초	7(중공블럭기초)	1		0	1
03. 기타 기초		02. 기초 보강	01. 기초보강	217(기둥플레이트보강), 548(철근콘크리트 기초보강), 629(기초보강과 복원), 632(지하확장 가설공법), 655(기초전단머리보강), 681(리모델링 기초공법), 723(두부보강)	7	684(강관말뚝공법), 798(기초보강), 816(기초보강)	3	10
		02. 침하구조물복원		470(침하구조물 복원)	1		0	1
03. 기타 기초		01. 우물통기초		54(우물통 기초시공), 57(우물통 기초보수)	2		0	2
		02. 집수정		452(집수정시공),	1	755(집수정제조 및 설치)	1	2
		03. 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		660(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	1		0	1
		04. 기타기초			0	897(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핀트)	1	1
05. 철근 콘크리트	01. 콘크리트 제조 타설	01. 콘크리트 수화열제어		350(매스콘크리트 수화열 제어), 353(건축 기초매스콘크리트 수화열 제어), 460(기초 매스콘크리트 수화열 제어), 509(매스콘크리트 수화열 제어), 546(매스콘크리트 수화열 제어), 618(매트 기초 균열 제어), 760(매스콘크리트 온도균열저감양생)	7		0	7
		02. 고성능콘크리트		264(준유동콘크리트 제조), 454(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 내화), 578(콘크리트 구조물 표면탈수), 609(고강도콘크리트수직부재내화), 617(콘크리트내화)	5		0	5
		03. 특수콘크리트		591(해안 매립지 지하구조물용 콘크리트 제조)	1		0	1
02. 철근 가공 및 조립		01. 철근이음		30(철근이음), 174(철근이음), 179(철근이음), 296(철근이음), 569(철근이음), 686(철근이음)	6	807(철근이음), 889(철근이음)	2	8
		02. 철근배근		362(철근배근), 478(나선철근망제작), 704(철근배근), 708(철근배근)	4	921(철근배근)	1	5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3. 거푸집	01. 슬랩거푸집	18(슬랩폼)	1	676(외벽 단열강폼)	1	2	
			02. 철근트러스거푸집	493(철근트러스합판거푸집), 534(철근트러스합판거푸집), 649(철근트러스합판거푸집)	3	881(철근트러스합판거푸집)	1	4	
			03. 일체식거푸집	281(벽체바닥동시타설거푸집), 457(유니트화된 바닥보거푸집), 515(일체식거푸집)	3		0	3	
			04. 저소음거푸집	583(저소음슬래브거푸집), 621(드롭형 슬래브거푸집), 782(저소음 거푸집)	3	950(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 958(저소음 거푸집)	2	5	
			05. 마감겸용거푸집	158(마감겸용거푸집), 280(마감겸용거푸집)	2		0	2	
			06. 특수거푸집	36(고강도모르터거푸집), 80(오철형거푸집), 85(역타설현수거푸집), 98(대형합판거푸집), 386(스티로폼거푸집)	5	833(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1	6	
			07. 거푸집자재	116(슬리브부식방지), 163(거푸집고 정장치)	2		0	2	
		04. 철근콘크리트 골조	01. 중공슬래브	695(중공슬래브), 628(중공슬래브)	2	744(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 778(중공슬래브), 956(데크슬래브), 975(중공슬래브)	4	6	
			02. 와이어매쉬슬래브	5(와이어매쉬슬래브)	1		0	1	
			03. 무거푸집기둥	505(무거푸집콘크리트기둥)	1	808(기둥), 964(무거푸집기둥)	2	3	
		05. 복합 구조체	01. 합성벽체	282(벽체접합)	1		0	1	
			02. 합성보	208(프리플렉스합성빔(건축))	1		0	1	
		06. PC (Precast Concrete)	01. PC계단	439(PC계단)	1		0	1	
			02. PC슬래브	732(PC슬래브), 736(PC슬래브), 638(PC슬래브)	3		0	3	
			03. PC기둥		0	853(PC기둥), 920(PC벽체)	2	2	
		07. 기타 철근콘크리트	01. 전단보강	641(플랫 슬래브)	1	706(전단보강공법)	1	2	
		06. 철골	01. 철골 가공 및 조립	01. 무지보하향골조	537(무지보하향골조)	1		0	1
				02. 구조체접합	235(보기둥접합), 292(보기둥접합), 318(강재볼트이음), 770(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4	727(역타공법), 961(기타)	2	6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2. 데크플레이트	01. 데크슬래브	51(데크슬래브), 94(데크슬래브), 115(데크슬래브), 176(데크슬래브), 393(데크슬래브), 604(트러스데크), 780(데크슬래브)	7		0	7
				273(강구조물방식), 416(강구조물방식)	2	792(강구조물방식)	1	3
		04. 복합 구조체	01. 합성보	133(하이브리드 빔), 418(합성보(건축)), 424(합성보(건축)), 541(합성보(건축)), 661(철골합성보)	5	800(합성보), 835(합성보), 843(합성보), 860(합성보), 868(합성보), 966(합성보)	6	11
				313(합성벽체)	1		0	1
				392(CFT기둥접합), 473(CFT기둥접합), 631(합성기둥)	3	970(합성기둥)	1	4
		05. 철골계단	01. 철골계단	410(철골계단), 756(철골계단)	2		0	2
06. 기타 철골			0	879(지붕보공법), 893(TH Beam공법)	2	2		
07. 조적	01. 벽돌	01. 벽돌앵커	198(벽돌앵커설치)	1		0	1	
	02. 블록	02. 블록조적	463(콘크리트 블록조적)	1		0	1	
	03. 기타 조적			0		0	0	
08. 마감	01. 석공	01. 건식석재설치	75(건식석재용앵글 제작), 169(건식석재설치), 177(석재오픈조인트 시공), 481(건식석재설치), 586(건식석재 설치)	5	928(건식석재설치)	1	6	
			218(석재고운다듬)	1		0	1	
	02. 타일			0		0	0	
	03. 목공			0		0	0	
	04. 금속	01. 트랜치	329(트랜치)	1		0	1	
	05. 유리			0		0	0	
	06. 지붕흡통	01. 지붕구조체시공	146(지붕구조체시공)	1		0	1	
	07. 미장	01. 온돌바닥	29(온돌바닥), 91(온돌바닥), 141(온돌바닥), 149(바닥마감), 284(온돌바닥), 472(온돌바닥)	6		0	6	
			0	779(바닥마감)	1	1		
08. 창호	01. 문틀설치	375(탈부착식 문틀 설치)	1		0	1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9. 방수			02. 유리창호설치	471(3중유리창틀 설치), 558(이중창호 설치)	2		0	2		
			09. 도장	01. 차열도장	338(차열도장)	1	771(로봇도장공법)	1	2	
			10. 수장	01. 건식벽체	358(건식벽체), 489(건식벽체), 764(WAS공법)	3	759(건식벽체), 944(무타공행잉공법)	2	5	
			11. 단열	01. 벽단열재	138(벽단열재)	1		0	1	
				02. 옥실단열	451(옥실단열)	1		0	1	
				03. 외단열	465(외단열), 508(외단열), 659(외벽 건식단열)	3	713(외단열), 793(외단열), 901(외단열)	3	6	
			12. 건축물 세척	01. 건축물세척	500(건축물세척)	1		0	1	
			13. 기타 마감		728(커튼월)	1	832(기타마감)	1	2	
			01. 일반방수	01. 도막방수		107(우레탄방수), 120(방수재료), 349(도막방수), 394(아스팔트 도막방수), 422(도막방수), 527(도막방수), 560(도막방수)	7	722(도막방수), 791(도막방수), 867(도막방수), 909(도막방수)	4	11
					02. 시트방수	39(시트방수), 326(시트방수), 536(시트방수)	3	802(시트방수), 806(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2	5
				02. 복합방수	01. 도막시트 복합방수	102(복합방수), 154(복합방수), 204(복합방수), 234(복합방수), 516(복합방수), 599(복합방수)	6	754(복합방수), 811(도막시트복합방수), 916(복합방수), 917(복합방수), 937(복합방수), 952(도막시트복합방수), 976(도막시트복합방수)	7	13
					02. 복합재료방수	347(복합방수), 413(복합방수), 476(복합방수)	3	677(복합방수), 734(복합방수), 766(복합방수), 789(복합방수), 829(복합방수), 865(복합방수), 872(복합방수), 882(복합방수), 886(복합방수), 908(복합방수), 930(복합방수), 941(복합방수), 942(복합방수), 946(복합방수), 963(복합방수), 982(복합방수)	16	19
					03. 구체 방수 및 지하 외방수	01. 지하외방수	367(지하외방수), 376(지하외방수), 467(지하외방수), 520(지하수조 벽체방수),	6	742(지하외방수)	1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10. 특수 건축물					587(지하외방수), 634(지하외방수)						
				02. 콘크리트구체방수	239(콘크리트 구체방수), 334(콘크리트 구체방수), 396(콘크리트 구체방수)	3	740(콘크리트 구체방수)	1	4		
				03. 벽체결로방지	253(벽체결로방지)	1		0	1		
				04. 모르타방수	298(수지모르타 방수)	1		0	1		
				05. 옥상단열방수	323(옥상 단열방수보수)	1		0	1		
	01. 초고층 건축물		01. 변위조정		593(초고층빌딩변위조정), 753(수평진동제어)	2		0	2		
				02. 셸, 돔, 아치형 구조물	01. 지붕구조	663(지붕구조)	1		0	1	
					02. 케이블시공	667(케이블시공)	1		0	1	
				03. 비정형 구조물	01. 경사구조물가설		608(경사구조물가설)	1		0	1
				04. 복합 구조물		01. 조립식구조물	240(조립식육실설치), 258(스틸하우스), 435(건축모듈러유닛)	3	971(조립식구조물)	1	4
						05. 내진 구조물	01. 제진공법	611(제진공법), 653(하이브리드 제진장치)	2		0
				06. 친환경 건축물	01. 태양광조명		579(태양광조명), 658(주광조명시스템)	2	773(일조공간제어),	1	3
	07. 기타 특수 구조물				0		0	0			
	11. 해체			01. 발파식 해체		0		0	0		
				02. 기계식 해체		0	717(절단공법)	1	1		
				03. 기타 해체		0	985(기타 해체)	1	1		
	12. 보수 보강	01. 건축 보수보강	01. 내벽면처리		268(공동주택 내벽면처리)	1		0	1		
				02. 내력보강	450(건축물 내력보강)	1	869(내력보강), 945(내력보강)	2	3		
		0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			682(철근콘크리트)	1	750(철근콘크리트), 818(콘크리트구조물보 수보강), 822(콘크리트균열보수), 863(콘크리트구조물보 수보강), 870(콘크리트누수보수)	5	6		
				03. 기타 보수보강			0	969(콘크리트중성화및 화재피해진단)	1	1	
		C 기계 설비	01. 건설 기계	01. 건축 기계설비	01. 수송시스템	84(건설현장수송시스템), 670(수송용 대형리프트)	2		0	2	
	02. 굴삭안정액관리				123(굴삭 안정액 관리)	1		0	1		

대분야	중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3. 기타 건축기계설비	746(외부보강형 물탱크조립)	1	805(물탱크)	1	2	
		02. 공기 조화/냉난 방설비	01. 배기	166(공조덕트), 245(주방배기), 337(기류유인팬)	3		0	3	
			02. 공조설비제어	301(공조설비제어)	1	929(지열개발이용)	1	2	
			03. 급기	514(공동주택급기)	1		0	1	
		03. 소방설비			0		0	0	
		04. 배관설비	01. 상수배관		0		0	0	
			02. 하수배관	623(하수 이중관배관)	1		0	1	
			03. 냉.온수배관	485(스테인레스관 배관), 633(온도유량 제어 절수형 배관)	2		0	2	
			04. 배관이음	129(파이프 배관), 664(맞대기 이음), 725(동파방지), 735(배관이음)	4	932(동파방지)	1	5	
		05. 파쇄설비			0		0	0	
		06. 순환골재 제조설비	01. 순환골재제조	121(벽돌용순환모래제조), 126(순환골재 제조), 261(순환골재 제조), 436(순환잔골재 제조), 486(순환골재 제조), 525(순환잔골재 제조)	6		0	6	
				02. 모래세척	26(모래세척)	1		0	1
				03. 파쇄골재제조	528(원석파쇄골재 제조)	1		0	1
				04. 순환토사제조		0		0	0
		07. 기타 건설기계			0		0	0	
	02. 플랜 트	01. 신산업 플랜트 설비			0		0	0	
			02. 복합 플랜트 설비		0		0	0	
			03. 기타 플랜트	01. 해수담수화		0	797(해수전해설비), 866(해수담수화)	2	2
	03. 통신 전자 및 제어 설비	01. 계측 및 제어설비			0		0	0	
			02. 자동화 시스템 설비		0		0	0	

대분야	기술 분야			만료 건설신기술		유효 건설신기술		신기술 총계	
	중분야	소분야	세분야	보호기간 만료 신기술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03. 기타 통신 전자 및 제어설비			0		0	0	
04. 환경 기계 설비	01. 환경 기계설비		01. 매립지환경개선	302(매립지 내부환경개선), 630(매립가스 증산기술)	2		0	2	
					0	925(자연채광조명시스템)	1	1	
	02. 폐기물 처리설비		01. 선별장치	161(매립쓰레기 선별장치)	1		0	1	
				02. 소각재처리	311(소각 재용융처리)	1		0	1
				03. 순환토사제조	590(순환토사 제조)	1		0	1
03. 기타 환경기계 설비		01. 기타 환경기계설비		0	831(기타 환경기계설비), 914(기타 환경기계설비), 988(기타 환경기계설비)	3	3		
계					722		265	987	

※ 현재 보호기간 중인 신기술도 시간이 경과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므로 날짜별로 신기술 목록이 상이할 수 있음.

